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65호

군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산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수목자원 또는 식

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5조(시민 복지의 증진)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유희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7.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 추진

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행사 및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군산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
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5. 시민정원사 활용·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6. 정원문화 조성사업
7. 정원 연구·조사

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66호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위 치
군산시청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옥 구 읍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 산 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회 현 면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임 피 면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서 수 면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
대 야 면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개 정 면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성 산 면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나 포 면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옥 도 면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2길 125
옥 서 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해 신 동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20
월 명 동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51
삼 학 동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17
신 풍 동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15
중 앙 동	전라북도 군산시 큰샘길 47
홍 남 동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77
조 촌 동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15
경 암 동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3길 56
구 암 동	전라북도 군산시 세풍길 21
개 정 동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339-5
수 송 동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나운 1동	전라북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 2동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 3동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25
소 룡 동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
미 성 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항로 37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별표] 군산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구 분	위 치	구 분	위 치
시 청	군산시 조촌동	군산시청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옥구읍사무소	옥구읍 선제리	옥구읍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6
옥산면사무소	옥산면 옥산리	옥산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00
회현면사무소	회현면 대정리	회현면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81
임피면사무소	임피면 읍내리	임피면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서수면사무소	서수면 서수리	서수면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 596
대야면사무소	대야면 지경리	대야면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7
개정면사무소	개정면 발산리	개정면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42
성산면사무소	성산면 고봉리	성산면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나포면사무소	나포면 옥곤리	나포면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옥도면사무소	금동	옥도면	전라북도 군산시 내향2길 125
옥서면사무소	옥서면 옥봉리	옥서면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들3길 10
해신동주민센터	금동	해신동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220
월명동주민센터	월명동	월명동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6길 51
삼학동주민센터	오룡동	삼학동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로 17
신평동주민센터	문화동	신평동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15
중앙동주민센터	신영동	중앙동	전라북도 군산시 큰샘길 47
홍남동주민센터	미원동	홍남동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377
조촌동주민센터	조촌동	조촌동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15
경암동주민센터	경암동	경암동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3길 56
구암동주민센터	구암동	구암동	전라북도 군산시 세풍길 21
개정동주민센터	개정동	개정동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339-5
수송동주민센터	수송동	수송동	전라북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나운1동주민센터	나운동	나운1동	전라북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2동주민센터	나운동	나운2동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3동주민센터	나운동	나운3동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25
소룡동주민센터	소룡동	소룡동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4길 30
미성동주민센터	산북동	미성동	전라북도 군산시 공향로 371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67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료업무등의 수당)” 을 “(의료업무 등의 수당)”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으로, “의료업무등” 을 “의료업무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 을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표 2]” 를 “별표 2”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6]” 을 “별표 6”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별표 8” ” 을 “별표 8” 로 한다.

제4조 중 “[별표 5]” 를 “별표 5” 로 한다.

제5조 중 “[별표7]” 을 “별표 7”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와 관련)

구 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이하	월 818,000원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와 관련)

근무연수별 / 등급별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월 973,000원
4년 이상	월 1,306,000원	월 967,000원
3년 이상	월 1,300,000원	월 961,000원
2년 이상	월 1,295,000원	월 956,000원
1년 이상	월 1,289,000원	월 950,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수</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수</u>	제1조(목적) ----- 「지방공무	원	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u>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u>	<u>당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u>	<u>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u>	<u>지방공무원</u> -----	
<u>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u>	<u>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u>	-----		
<u>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u>	<u>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u>	-----		
<u>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	공무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이하 영 이라 한다) -----		
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	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	-----		
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	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	-----		
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	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	-----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	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	-----		
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	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	-----		
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	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	-----		
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u>의료업무 등</u> -----		
에게 지급하는 <u>의료업무등의</u> 수당	에게 지급하는 <u>의료업무등의</u> 수당	-----.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1. ----- <u>별표 1</u> --		
의 지급구분표	의 지급구분표	-----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	2. ----- <u>별표 2</u> --		
표 2]의 지급구분표	표 2]의 지급구분표	-----		
3. 삭 제	3. 삭 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6]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6]	4. ----- <u>별표 6</u> ---		
의 지급구분표	의 지급구분표	-----		

현행	개정안												
5.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8”의 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14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7]과 같다. [별표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table><tr><th>구분</th><th>전문의</th><th>일반의</th></tr><tr><td>갑지</td><td>월 609,000원 이하</td><td>월 518,000원 이하</td></tr></table>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구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609,000원 이하	월 518,000원 이하	5. ----- 별표 8----- ----- 제4조(장려수당) ----- ----- ----- ----- ----- ----- ----- 별표 5-----.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 ----- ----- ----- ----- 별표 7----- -----. [별표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table><tr><th>구분</th><th>전문의</th><th>일반의</th></tr><tr><td>갑지</td><td>월 909,000원 이하</td><td>월 818,000원 이하</td></tr></table>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구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구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609,000원 이하	월 518,000원 이하											
구분	전문의	일반의											
갑지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현행			개정안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급 나급		
5년이상	월 1,012,000원 이하	월 673,000원 이하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006,000원 이하	월 667,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000,000원 이하	월 661,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995,000원 이하	월 656,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989,000원 이하	월 650,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68호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전단 중 “12. 31.”를 “11. 1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 금의 존속기한은 2025. <u>12. 31.</u> 로 한 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 ----- <u>11. 10.</u> ----- . -- ----- ----- ----- ----- ----- -----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69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도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공개하며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제5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
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를 “「고
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단, 감면기간 적용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제4항 제5호 라목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의 유효기간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u>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지방도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생략)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u>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해 연1회이상 공개하며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같음할 수 있다.</u>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략)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④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5. -----

현행	개정안
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 나. (생략)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신설> 6. (생략) ⑤ (생략)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 ----- ----- ----- ----- ----- 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단, 감면기간 적용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함) 6.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70호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3년으로”를 “4년 이내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협력사업비를”로,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제10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연평균잔액 대비”를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 ② (생략)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는 나누지 아니한다.	제3조(금고지정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4년 이내로 ----- -----.
제10조(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① 시장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 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규 금고은행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연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2. 복수금고의 경우에는 신규 금고은행별 연평균 출연금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별 연평균 출연금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연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제10조(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협력사업비를 -----, 시장은 ----- -----.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 행정안전부장관 ----- -----. 1. ----- ----- -----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 ----- 2. ----- ----- -----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71호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① ----- ----- ----- ----- <u>처우개선위원회</u> ----- -----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은 부시장, 관계공무원, 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삭 제>
<신 설>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④ (생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u>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삭 제></u>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72호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 을 삭제한다.

제1조 중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을 “**구성**” 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호선한다.**” 를 “**선출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하되, 2회”를 “하며 1회”로,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위원의”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청취하거”를 “듣거”로 한다.

제12조 중 “차기회의”를 “다음회의”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를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는 공포후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u>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 ③ <u>위원회의 위원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u>	① <삭제> 제1조(목적) ----- ----- ----- <u>구성</u>-----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u>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선출한다.</u> ③ <u>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소속 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u>

현행	개정안
<u>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1. <u>군산교육지원청 또는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u> 2. <u>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 3. <u>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u> 4. <u>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u><신 설></u>	<u>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① <u><삭 제></u> ① <u><삭 제></u> ① <u><삭 제></u> ① <u><삭 제></u> <u>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u> <u>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3</u>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 간으로 한다.	<u>조의2를 따른다.</u> 제4조(위원의 임기) ① ----- ----- 하며 1회----- -----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 된 위원 ----.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이 제8조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4. ----- ----- <u>않아</u> ----- -----
제7조(회의) ① (생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② ----- ----- <u>회의를 시작하고</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① <삭 제>

현행	개정안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 ----- ----- <u>듣기</u> ----- -----.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u>차기회의</u> 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 ----- <u>다음회의</u> -----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u>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u>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 ----- 「 <u>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 -----. ----- ----- <u>경우는</u>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73호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산시립도서관(본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 을 “군산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대회의실” 을 “새만금드림홀”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수료” 라 함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 중 일정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 라 함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를 “별표 3과” 로 하고, 같

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만취자 및 전염병**” 을 “**음주한 자 및 감염병**”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관 · 외대출**” 을 “**관내 · 관외대출**” 로 한다.

제7조 중 “**대체하게 하고 현품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 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를 “**대체하게**”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료는**” 을 “**자료, 회수불능자료는**”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 · 수수료)**” 를 “**(사용료 · 수수료 · 수강료)**”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를 “**사용자의 사용료와 이용사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자의 수수료 및**” 으로, “**사용료와 수수료**” 를 “**수강료**” 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하되**” 를 “**하되 1회에 한하여**” 로, “**있으며**” 를 “**있 으며,**” 로, “**한다**” 를 “**하되 임기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 다**” 로 한다.

제21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제22조제3항 중 “**도서진흥계장**” 을 “**관리계장**” 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과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제27조제4항 중 “하되,” 를 “하되, 1회에 한하여” 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분관운영계장” 을 “작은도서관운영계장” 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질병, 그 밖에” 를 “질병의” 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금강도서관은 정식개관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사 용 료 (제13조 관련)

1. 도서관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기준	사 용 료(원)	비 고
새만금드림홀	1회	30,000	1. 사용시간별 구분 1일 09:00 ~ 21:00 1회 기준 4시간 이내
교양문화실	1회	20,000	2. 사용시간이 1회 기준 미달한 때에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3. 1시간 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이상 2시간미만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2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를 전액 가산한다.(다음회 사용자가 있을 경우 초과 사용 불과)

2. 기타설비 사용료

설 비 명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음 향	음향설비	1회	10,000	· 유선마이크 3대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시 1대당 2,000원 가산
	무선마이크	1대	5,000	
조 명	새만금드림홀	1회	25,000	· 효과기기에 관련된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
빔프로젝트	새만금드림홀	1회	10,000	
	교양문화실			
냉 . 난방	새만금드림홀	1회	20,000	· 1회는 4시간 이내로 한다
	교양문화실		10,000	

[별표 2]

수수료 및 수강료 (제13조 관련)

수 수 료

※ 수수료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가 시립도서관에 임대한 기기의 이용 발생 수익(복사카드 판매금액, 신용카드 결제액 등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의 일정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

[임대기기 이용료 안내 (기준 1매)]

구 분		규 격	금 액(원)
복사	흑백	A4	40
		A3	80
프린트	흑백	A4	50
		A3	100
	컬러	A4	200
		A3	400

수 강 료

※ 수강료란, 문화강좌(정기)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구 분	기 간	기 준	금 액(원)
수강료(문화강좌)	1개월	4주	10,000원
비 고	*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별표 3] <신 설>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1. 공공도서관(제3조 관련)

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1	군산시립도서관	군산시 축동로 72	본관
2	임피채만식도서관	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39	
3	늘푸른도서관	군산시 하나운로 17	
4	설림도서관	군산시 설림길 25	
5	산들도서관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27	
6	금강도서관	군산시 공포3로 30	

2. 작은도서관 (제25조 관련)

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1	구암작은도서관	군산시 구암3.1로 245	
2	미성작은도서관	군산시 동아로 31	
3	월명작은도서관	군산시 구영7길 6	
4	미룡작은도서관	군산시 미룡로 42	
5	흥남작은도서관	군산시 풍문2길 35	
6	나포작은도서관	군산시 나포면 교동2길 5	
7	조촌작은도서관	군산시 양안로 133	
8	나운작은도서관	군산시 대학로 330	
9	산단작은도서관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0	서수작은도서관	군산시 서수면 탑천로596	
11	성산작은도서관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12	중동작은도서관	군산시 서래안2길 22	
13	개정작은도서관	군산시 변영로 329	
14	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	군산시 둔배미길 29	민간운영
15	수미작은도서관	군산시 수송동로 18	민간운영
16	평화작은도서관	군산시 오룡로 9	민간운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u>군산시립도서관(본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u>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 ----- <u>군산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한다)</u> ----- -----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부대시설” 이라 함은 도서관 내의 <u>대회의실, 교양문화실 및 기타시설</u> 을 말한다. 4. (생략) 5. “수수료” 라 함은 <u>도서관에 비치한 정보 및 자료를 복사, 인쇄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u>	제2조 (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새만금드림홀</u> ----- -----. 4. (현행과 같음) 5. “수수료” 라 함은 <u>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 상대자가 도서관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 중 일정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u> 6. “수강료” 라 함은 문화강좌를
<신설>	

6. · 7. (생 략)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립도서관(본관) : 군산시
축동로 72
2. 임피채만식도서관 : 군산시 임
피면 임피향교길 39
3. 늘푸른도서관 : 군산시 하나운
로 17
4. 설립도서관 : 군산시 설립길 25

제5조 (입관의 제한)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입관 후라 할지라도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자 및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 3. (생 략)

제6조 (관외대출) ① (생 략)

② 희귀자료 · 고서 · 귀중자료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관 · 외대출을 제한할 수

수강신청한 자료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
----- 별표 3과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 (입관의 제한) -----

-.

1. 음주한자 및 감염병 -----
--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 (관외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관내 ·
관외대출-----.

있다.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게 하고 현품 대체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 (사용료·수수료)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자 및 자료의 복사, 인쇄 등을 하는 자와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한 자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략)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

----- 대체하게 -----

-----.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

----- 자료, 회수불능자료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사용료·수수료·수강료) -

----- 사용자의 사용료와 이용자

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

약자의 수수료 및 -----

----- 수강료-----

--.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하되 1

회에 한하여 -----

--- 있으며, ----- 하되 임기

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 설>

제22조 (회의 등) ① · ② (생략)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진흥계장이 된다.

④ · ⑤ (생략)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암작은도서관 : 군산시 구암 3.1로 245

2. 미성작은도서관 : 군산시 동아로 31

의 4분의 1이하이면 선출하지 않는다.

제21조 (위원의 해촉) -----

-----.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회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관리계장-----.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3과 같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3. 월명작은도서관 : 군산시 구영7
길 6

4. 미룡작은도서관 : 군산시 미룡
로 42

5. 흥남작은도서관 : 군산시 풍문2
길 35

6. 나포작은도서관 : 군산시 나포
면 교동2길 5

7. 조촌작은도서관 : 군산시 양인
로 133

8. 나운작은도서관 : 군산시 대학
로 330

9. 산단작은도서관 : 군산시 산단
남북로 169

10. 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 :
군산시 둔배미길 29

11. 수미작은도서관 : 군산시 수송
동로 20

12. 서수작은도서관 : 군산시 서수
면 탑천로 596

13. 평화작은도서관 : 군산시 오룡
로 9

제27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
으로 한다.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제27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되, 1회에 한하여 -----

⑤ (생 략)

제30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분관운영계장이 된다.

④ (생 략)

제31조 (자문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작은도
서관운영계장-----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 (자문위원의 해촉) -----

-----.

1. -----
- 질병의 -----

2. ·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사용료(제13조 관련) <table><tr><td>시설명</td></tr><tr><td>대회의실</td></tr></table>	시설명	대회의실	[별표 1] 사용료(제13조 관련) <table><tr><td>시설명</td></tr><tr><td>새만금드림홀</td></tr></table>	시설명	새만금드림홀																																																				
시설명																																																									
대회의실																																																									
시설명																																																									
새만금드림홀																																																									
[별표 2] 수수료(제13조 관련) 수수료(제13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기준</th><th>금액(원)</th></tr><tr><td rowspan="2">자료 복사료</td><td>A4</td><td>1매</td><td>40</td></tr><tr><td>B4</td><td>1매</td><td>40</td></tr><tr><td>프린터 사용료</td><td>A4</td><td>1매</td><td>50</td></tr><tr><td>문화강좌</td><td>1월</td><td>1월 4주</td><td>10,000원</td></tr><tr><td>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td><td colspan="3">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td></tr></table>	구분	규격	기준	금액(원)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4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50	문화강좌	1월	1월 4주	10,000원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			[별표 2] 수수료 및 수강료(제13조 관련) 수수료 및 수강료 (제13조 관련) 수 수 료 ※ 수수료란,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 대자가 시립도서관에 임대한 기기의 이용 발생 수익(복사 카드 판매금액, 신용카드 결제액 등 이용자의 임대기기 이용료) 중 일정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비용 [임대기기 이용료 안내 (기준 1매)]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규 격</th><th>금 액(원)</th></tr><tr><td rowspan="2">복사</td><td rowspan="2">흑백</td><td>A4</td><td>40</td></tr><tr><td>A3</td><td>80</td></tr><tr><td rowspan="4">프린트</td><td rowspan="2">흑백</td><td>A4</td><td>50</td></tr><tr><td>A3</td><td>100</td></tr><tr><td rowspan="2">컬러</td><td>A4</td><td>200</td></tr><tr><td>A3</td><td>400</td></tr></table> 수 강 료 ※ 수강료란, 문화강좌(정기)를 수강신청한 자료부터 징수하는 비용 <table><tr><th>구 분</th><th>기 간</th><th>기 준</th><th>금 액(원)</th></tr><tr><td>수강료(문화강좌)</td><td>1개월</td><td>4주</td><td>10,000원</td></tr><tr><td>비 고</td><td colspan="3">*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td></tr></table>	구 분		규 격	금 액(원)	복사	흑백	A4	40	A3	80	프린트	흑백	A4	50	A3	100	컬러	A4	200	A3	400	구 분	기 간	기 준	금 액(원)	수강료(문화강좌)	1개월	4주	10,000원	비 고	*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구분	규격	기준	금액(원)																																																						
자료 복사료	A4	1매	40																																																						
	B4	1매	40																																																						
프린터 사용료	A4	1매	50																																																						
문화강좌	1월	1월 4주	10,000원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름																																																								
구 분		규 격	금 액(원)																																																						
복사	흑백	A4	40																																																						
		A3	80																																																						
프린트	흑백	A4	50																																																						
		A3	100																																																						
	컬러	A4	200																																																						
		A3	400																																																						
구 분	기 간	기 준	금 액(원)																																																						
수강료(문화강좌)	1개월	4주	10,000원																																																						
비 고	* 문화강좌 재료비와 교재비 본인 부담																																																								

현행	개정안																																																																																																
	〔별표3〕 신설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제3조, 제25조 관련)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1. 공공도서관(제3조 관련) <table><tr><th>번호</th><th>명칭</th><th>소재지</th><th>비고</th></tr><tr><td>1</td><td>군산시립도서관</td><td>군산시 축동로 72</td><td>본관</td></tr><tr><td>2</td><td>임피채만석도서관</td><td>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39</td><td></td></tr><tr><td>3</td><td>늘푸른도서관</td><td>군산시 하나운로 17</td><td></td></tr><tr><td>4</td><td>설림도서관</td><td>군산시 설림길 25</td><td></td></tr><tr><td>5</td><td>산들도서관</td><td>군산시 옥구읍 옥구로27</td><td></td></tr><tr><td>6</td><td>금강도서관</td><td>군산시 공포3로 30</td><td></td></tr></table> 2. 작은도서관(제25조 관련) <table><tr><th>번호</th><th>명칭</th><th>소재지</th><th>비고</th></tr><tr><td>1</td><td>구암작은도서관</td><td>군산시 구암3.1로 245</td><td></td></tr><tr><td>2</td><td>미성작은도서관</td><td>군산시 동아로 31</td><td></td></tr><tr><td>3</td><td>월명작은도서관</td><td>군산시 구영7길 6</td><td></td></tr><tr><td>4</td><td>미룡작은도서관</td><td>군산시 미룡로 42</td><td></td></tr><tr><td>5</td><td>흥남작은도서관</td><td>군산시 풍문2길 35</td><td></td></tr><tr><td>6</td><td>나포작은도서관</td><td>군산시 나포면 교동2길 5</td><td></td></tr><tr><td>7</td><td>조촌작은도서관</td><td>군산시 양안로 133</td><td></td></tr><tr><td>8</td><td>나운작은도서관</td><td>군산시 대학로 330</td><td></td></tr><tr><td>9</td><td>산단작은도서관</td><td>군산시 산단남북로 169</td><td></td></tr><tr><td>10</td><td>서수작은도서관</td><td>군산시 서수면 탐천로596</td><td></td></tr><tr><td>11</td><td>성산작은도서관</td><td>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td><td></td></tr><tr><td>12</td><td>중동작은도서관</td><td>군산시 서래안2길 22</td><td></td></tr><tr><td>13</td><td>개정작은도서관</td><td>군산시 번영로 329</td><td></td></tr><tr><td>14</td><td>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td><td>군산시 둔배미길 29</td><td>민간 운영</td></tr><tr><td>15</td><td>수미작은도서관</td><td>군산시 수송동로 18</td><td>민간 운영</td></tr><tr><td>16</td><td>평화작은도서관</td><td>군산시 오룡로 9</td><td>민간 운영</td></tr></table>	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1	군산시립도서관	군산시 축동로 72	본관	2	임피채만석도서관	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39		3	늘푸른도서관	군산시 하나운로 17		4	설림도서관	군산시 설림길 25		5	산들도서관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27		6	금강도서관	군산시 공포3로 30		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1	구암작은도서관	군산시 구암3.1로 245		2	미성작은도서관	군산시 동아로 31		3	월명작은도서관	군산시 구영7길 6		4	미룡작은도서관	군산시 미룡로 42		5	흥남작은도서관	군산시 풍문2길 35		6	나포작은도서관	군산시 나포면 교동2길 5		7	조촌작은도서관	군산시 양안로 133		8	나운작은도서관	군산시 대학로 330		9	산단작은도서관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0	서수작은도서관	군산시 서수면 탐천로596		11	성산작은도서관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12	중동작은도서관	군산시 서래안2길 22		13	개정작은도서관	군산시 번영로 329		14	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	군산시 둔배미길 29	민간 운영	15	수미작은도서관	군산시 수송동로 18	민간 운영	16	평화작은도서관	군산시 오룡로 9	민간 운영
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1	군산시립도서관	군산시 축동로 72	본관																																																																																														
2	임피채만석도서관	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39																																																																																															
3	늘푸른도서관	군산시 하나운로 17																																																																																															
4	설림도서관	군산시 설림길 25																																																																																															
5	산들도서관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27																																																																																															
6	금강도서관	군산시 공포3로 30																																																																																															
번호	명칭	소재지	비고																																																																																														
1	구암작은도서관	군산시 구암3.1로 245																																																																																															
2	미성작은도서관	군산시 동아로 31																																																																																															
3	월명작은도서관	군산시 구영7길 6																																																																																															
4	미룡작은도서관	군산시 미룡로 42																																																																																															
5	흥남작은도서관	군산시 풍문2길 35																																																																																															
6	나포작은도서관	군산시 나포면 교동2길 5																																																																																															
7	조촌작은도서관	군산시 양안로 133																																																																																															
8	나운작은도서관	군산시 대학로 330																																																																																															
9	산단작은도서관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10	서수작은도서관	군산시 서수면 탐천로596																																																																																															
11	성산작은도서관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0																																																																																															
12	중동작은도서관	군산시 서래안2길 22																																																																																															
13	개정작은도서관	군산시 번영로 329																																																																																															
14	노인종합복지관 작은도서관	군산시 둔배미길 29	민간 운영																																																																																														
15	수미작은도서관	군산시 수송동로 18	민간 운영																																																																																														
16	평화작은도서관	군산시 오룡로 9	민간 운영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74호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 중 “양도하거나 전대”를 “양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⑤ (생략) ⑥수탁자는 안전체험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안전체험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u>양도하거나 전대</u> 할 수 없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양도</u>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75호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양도하거나 전대”를 “양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생략)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 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②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 도하지 못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76호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 1호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43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방화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하고, 대수선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u>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39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2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u> 1.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43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방화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하고, 대수선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조례 제1977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동상표”라 함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새들군산』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 등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조례 제2조 관련)

1. 모양 및 색상



2. 디자인 설명

가. 새만금의 ‘새’ + 군산의 논과 밭 ‘들’ + 지역명 ‘군산’

나. ‘새들’ = ‘때묻지 않은 새로운 땅’

다. ‘새들’ = ‘새로운 들’

3. Image

가. 시원한 블루계열 컬러가 청정한 자연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금강의 물줄기 모습을 형상화 한 로고타입으로 청정지역 군산을 부각시켜 신뢰감을 조성

나. 넓고 푸른 ‘들’ 과 맑고 깨끗한 ‘물’ 이 군산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4. Color

친환경적인 군산의 푸른 이미지를 하늘색과 파랑색으로 표현함

5. 작도방법

표준매뉴얼의 작도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정비례로 재현하거나 축소·확대하여야 하며 디자인의 최소 사용규정은 가로 14mm로 한다.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783호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7조의2**”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정에**”를 “**규정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u>법 제37조의2</u>의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32조의3 제2항에서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② <u>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u> ③ (생략) ④ 위원회는 <u>지방재정영향평가</u> 결과에 대한 심사를 <u>실시할 수 있다.</u> 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기준은 심사규칙 제5조의 <u>규정</u>에 따른다. ② (생략)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① <u>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u>----- ----- -----<u>〈후단 삭제〉</u> ② <u>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 <u>법 제27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u>----- ----- <u>한다.</u> 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① ----- ----- <u>규정을</u> -----.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784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2항 “**감정평가법인**” 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가격평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u>감정평가법</u> 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현행과 같음) ② ----- ----- <u>감정평가법인등</u> (「 <u>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4호를 말한다)의 -----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785호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을 “**임피채만식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금강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서관 학습실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선거일에 휴관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서관 자료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 시립도서관, 금강도서관
2. 매주 일요일 : 임피채만식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관한다. 다만, 타 기관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관의 휴관일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자료의 정리,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아니한다**”를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열람실내**”를 “**학습실내**”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학증명서**”를 “**청소년증, 재학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보험증**”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생증**”을 “**학생증 등**”으로 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참여자**”를 “**참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양한 형태의 비도서자료

제8조제2항 중 “**대체하여야 하며 현품대체가 불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현금변상 하여야**”를 “**대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하여야 하며 징수한 변상금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을 “**관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자료삭제

1. 관외대출한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 이

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자료대출 후 반납기한이 3년이상 경과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2회 이상의 장서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제5항 중 “**사립문고**”를 “**사립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료 · 수강료 납부**)”를 “(**사용료 · 수수료 · 수강료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수강료는 수강 신청시에 전액을**”을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는 당월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익월 초에**”로 한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강료는 수강 신청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료 · 수수료 반환**)”을 “(**사용료 · 수강료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수수료**”를 “**수강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수료**)”를 “(**수강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수료를**”을 “**수강료를**”로, “**수수료 납부**”를 “**수강료 납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수료**”를 “**이용료**”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시 간(제2조 관련)

구 분		이 용 시 간			
		월요일	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시 립 도서관	아동·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휴 관	09:00 ~ 18:00		
	학습실	07:00 ~ 22:00			
	새만금드림홀 교양문화실	09:00 ~ 21:00			
임피채만식도서관		09:00 ~ 18:00			휴관
늘푸른도서관		09:00 ~ 18:00			휴관
설 립 도서관	아동·유아·일반자료 실	09:00 ~ 18:00			휴관
	학습실	09:00 ~ 22:00			
산들도서관		09:00 ~ 18:00			휴관
금강도서관		휴관	09:00 ~ 18:00		
작 은 도서관	구암·월명·미성 미룡·홍남·나포 나운·산단·서수 성산·중동·개정	09:00 ~ 18:00			휴관
	조촌	휴관	09:00 ~ 18:00	10:00~19:00	
	노인종합복지관	09:00~18:00(3~10월) 09:00~17:00(11월~2월)		휴관	
	수미	09:00~18:00		휴관	
	평화	10:00~18:00		휴관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증

(전 면)

도 서 관 회 원 증	
회원번호 : 성 명 :	
군 산 시 립 도 서 관	

(후 면)

유 의 사 항 · 도서대출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대출권수(1인당 5권), 대출기간(14일) · 분실 또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 시 즉시 연락바랍니다. (분실 시 신고후 14일 이후 재발급 가능) · 반납기일 연체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중지 됩니다. · 대출한 자료의 분실 및 파손시 동일자료로 변상해야 합니다. ※ 군산시립도서관 063-454-5620(자료실 5645, 5648) ※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gunsan.go.kr
군 산 시 립 도 서 관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신규(일반회원) ☐ 신규(책이음회원) ☐ 책이음회원전환 ☐ 재발급							
성 명		생년월일		비밀번호 (네 자리)			
휴대폰			제2연락처	(관계:)			
주 소	군산시						
직장/학교 (해당자)	직 장 (학 교)			전화번호 (학년/반)			
가족회원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비밀번호		
본인은 군산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대출기한 준수, 분실 또는 훼손 시 변상)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군산시립도서관 회원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회원가입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 안내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자료 대출 및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책이음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기관에 정보를 제공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동 의 함 ☐ - 회원가입 시 유의사항 - 1. 도서는 군산시민의 재산이므로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분실·훼손시 동일자료 변상) 2. 대출자료 연체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중지 됩니다. 3. 회원증 분실 시 즉시 신고하고 미신고로 인한 제반문제는 회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회원증 분실 시 신고 후 <u>14일 이후 재발급</u>이 가능합니다. 5. 회원증을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문제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입니다. ※ 위 개인 정보에 의거, 우편 및 문자메세지(sms) 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인)							

☐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책이음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원제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핸드폰)

나. 선택항목 : 사용자 ID, 비밀번호, 가족 ID, E-Mail, 메일수신여부, 휴대폰번호, SMS수신여부, 근무지 주소, 근무지 전화, 근무처, 부서명, 학교명, 학년, 반, 번호

다. 사용 중 생성 항목 : 회원번호, 성별, 관리구분, 소속코드, 직급코드, 책이음회원여부, 실명인증코드, 회원구분, 가입자료실, 우편발송지역, 회원상태, 등록일자, 수정일자, 제적일자, 대출정지일, 대출정지회원사유, 회원증분실여부, 회원증발급횟수, 현재대출책수, 현재연체책수, 누적연체횟수, 누적연체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탈퇴 의사 후 즉시 파기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책이음서비스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의 3자【타도서관】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가. 책이음회원 가입시 가입도서관에 개인정보 수집 후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이용하지 않는 도서관을 최초 이용하는 시점에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나. 참여도서관 및 개인정보 제공 현황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내 공공도서관지원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books.nl.go.kr>)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하나의 회원증으로 참여하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책이음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원제서비스 이용, 개인 식별,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휴대폰, E-Mail, 생일, 자택우편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 근무지우편번호, 근무지주소, 근무지전화, 근무처, 부서명, 학교명, 학년, 반, 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가. 보존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나. 보존기간 : 탈퇴 의사 후 즉시

5.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책이음서비스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입 · 퇴관 및 열람시간) 군산시립도서관(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임피채만식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입 · 퇴관 및 열람시간) ----- ----- <u>임피채만식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금강도서관</u> ----- ----- ----- ----- -----.
제3조 (휴관) ① <u>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u>	제3조 (휴관) ① <u>도서관 학습실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선거일에 휴관한다.</u>
1. <u>시립도서관 :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선거일(임시공휴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은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u>	<삭 제>
2. <u>임피채만식도서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u>	<삭 제>
3. <u>작은도서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u>	<삭 제>

4. 늘푸른도서관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5. 설립도서관 :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선거일(임시공휴일)로 한다. 다만, 자료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휴관한다.

② 도서관의 정리·점검 및 부대시설물의 대청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거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② 도서관 자료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 시립도서관, 금강도서관

2. 매주 일요일 : 임피채만식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립도서관, 산들도서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관한다. 다만, 타 기관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관의 휴관일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자료의 정리, 점검 등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생 략)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지정된 장소외에서 흡연, 음주, 잡담, 음식섭취,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3. (생 략)

4. 열람실내에서 수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 8. (생 략)

③ · ④ (생 략)

제5조 (회원가입) ① (생 략)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아니된다.

3. (현행과 같음)

4. 학습실내-----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회원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구비서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중·고등학생(신분증미발급자)
- 학생증(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유아·아동 - 보호자동반, 의료
보험증
4. 군산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 재
직(학) 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학생증

제6조 (회원증발급 및 사용·책임)

① ~ ④ (생 략)

⑤ 회원으로서 타 시·군으로 거
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 즉시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
다.

⑥ (생 략)

제7조 (관외대출) ① (생 략)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관외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1. (생 략)

2. 도서관 행사 참여자 중 성적우

-----.

1. ----- 운
전면허증 등

2. -----
----청소년증,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3. ----- 가족관계
증명서 등

4. -----

-- 학생증 등

제6조 (회원증발급 및 사용·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제7조 (관외대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참여한 사람 -----

수자

3. (생 략)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DVD 등 기타 비도서자료

6. (생 략)

④ (생 략)

제8조 (관외대출자료의 반환 및 변상) ① (생 략)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로 대체하여야 하며 현품대체가 불가능한 자료는 시가로 현금 변상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를 대체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체자료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징수한 변상금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를 관외대출한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

-

3.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다양한 형태의 비도서자료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관외대출자료의 반환 및 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체하여야 -----

-.

③ -----

----- 관리 -----

--.

제10조 (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자료(삭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제적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기증) ① ~ ④ (생략)

⑤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문화 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 수강료 납부) 도서관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수강 신청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조례 제8조 제1항에 준하여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1. 관외대출한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해외 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회수(반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자료대출 후 반납기한이 3년이상 경과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2회 이상의 장서점검에도 불구하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 (자료의 기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사립작은도서관 -----
-----.

제16조(사용료 · 수수료 · 수강료 납부) ① -----

이용자용 사무기기 설치운영 임대차 계약상대자는 당월 판매수익의

<신 설>

제18조(사용료·수수료 반환) ①이
미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유가
부대시설사용자 및 수강자에게 있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2. (생 략)

3.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
강개시일 이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 : 수수료 전액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 한 경
우 : 사용료(수수료) 전액

②·③ (생 략)

④ 제1항3호,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료반환신청서(별지 제
12호서식)에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료복사카드를 이용하다가 사
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수수료
잔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일정부분을 익월 초에 ---.

② 수강료는 수강 신청시에 전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수강료 반환)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 수
강료 ---

4. -----

--(수강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수강료를 -----
----- 수강
료 납부 -----
-----.

⑤ -----
----- 이용료 -----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2년 7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786호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중 “**농수산물유통과장**”을 “**먹거리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상품류	세 부 품 목
29류	냉동콩, 냉동된 완두콩, 보존처리한 과일(냉동한 과일은 제외), 보존처리한 멜론,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양념된 피클, 장아찌, 장아찌(울외를 이용한 것), 절임오이, 보존처리된 렌즈콩, 보존처리된 완두콩, 식용 들기름, 식용 참기름, 식용 콩기름, 식용유, 살겨유, 옥수수기름, 참기름, 소금에 절인 배추, 도라지환(丸), 도라지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오가피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잼, 냉동가지,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냉동배추, 냉동버섯, 냉동양파, 냉동오이, 냉동당근, 냉동마늘, 냉동인삼, 건시(꽃감)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제30류	감자가루, 도정한 곡물, 보리가루, 식용 감자가루, 식용 겉겨를 없앤 귀리,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율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현미가루, 쌀(백미), 쌀가루, 옥수수가루, 으깬귀리, 으깬보리, 콩가루, 탈곡한 귀리, 탈곡한 찰흑미, 탈곡한 흰찰쌀보리, 탈곡한 찹쌀, 탈곡한 현미, 탈곡한 보리, 탈곡한 쌀,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굵게 간 옥수수, 메주, 약과, 엿, 전과, 한과, 떡, 간장, 고추장, 된장, 장(醬)류, 청국장, 식초, 차, 보리차, 도라지차, 율무차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제30류	강낭콩, 미가공 곡물, 미가공 귀리, 미가공 두류, 미가공 들깨, 미가공 메밀, 미가공 밀, 미가공 벼, 미가공 보리, 미가공 수수, 미가공 참깨, 벼, 생렌즈콩, 생옥수수, 생완두콩, 생잠두콩, 생콩, 생팥, 땅콩, 생밤, 생포도, 수박, 앵두, 은행, 자두, 잣, 참외, 포도, 호두, 배, 멜론, 단감, 호박, 단호박, 밤호박, 애호박, 샐러드용 치커리, 부추, 상추, 오이, 신선채소, 양파, 치커리뿌리, 시금치, 생버섯, 감자, 생감자, 가지, 고구마, 방울토마토, 생도라지,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토마토, 쥐눈이콩(신선한 것), 검은콩(신선한 것), 신선한 과일, 신선한 과일 및 채소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제32류	감주(음료), 과일주스, 과일주스를 함유한 무알콜음료, 냉동과일음료, 밀감수, 비알콜성 음료, 포도주스, 포도액, 채소 또는 과일 가공음료, 인삼주스(음료), 음료용 인삼엑기스, 음료용 인삼분말, 비알콜성 과일 엑기스, 비알콜성 과일주스음료, 채소주스음료, 토마토주스, 토마토 주스음료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제33류	쌀로 빚은 술, 인삼주, 탁주, 막포도주, 매실주, 머루주, 배술, 버찌주, 사과주, 식탁용 포도주, 천연발효성 포도주, 포도주, 약용주(藥用酒) 그밖에 해당 상품류에 속하는 품목 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의회경제건설위원, 농업축산과장, 농수산물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생략)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각 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시의회경제건설위원, 농업축산과장, 먹거리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고시 제2022-85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8.

군 산 시 장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 29건, 분할 4건, 변경 1건, 폐지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별 도 첨 부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063-454-398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2022. 7.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고 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길 48-8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 도길 48-8	20110729		20090508	섬이름 사용	
건물번호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길 48-8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 도길 48-10	20220705		20090508	섬이름 사용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송산1길 34 (송풍동)		20220705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651, 612-18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552 (미룡동)	2022070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33-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83 (미장동)	20220704		20150127	미장동의 남쪽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신촌2길 8-4 (조촌동)		20220704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9-7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4-14 (미장동)	20220704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변경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가자길 12-11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가자 길 22-6	20220704	입구 변경	20100125	서수리 호산 마을의 옛이름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원발산길 38-13		20220704	건물 신축	20070528	발산리 원발산 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51-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남로 66 (미장동)	20220630		20150127	미장동의 남쪽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개정안길 49		20220630	건물 신축	20090508	운회,아산,발산,통사리를 지나 는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864-1, 864-2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평 길 120	20220630		20070528	대정리 구평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42-41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원서 포길 31	20220629		20100125	서포리 원서포 마을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48-1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3길 4-9 (미장동)	20220628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206-3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위 안길 45	20220628		20070528	대위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513-6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구 남로 11	20220705	건물 신축	20100125	옥구중심에서 남쪽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2길 5-1 (나운동)		20220624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871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서악 길 41	20220624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19-5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645 (신관동)	20220624		20100125	군산대학교를 지나는 도로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76 (경장동)		20220623	건물 신축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현대타이 어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78 (경장동)		20220623	건물 신축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변영로 80 (경장동)		20220623	건물 신축	20090710	군산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기존도로명 활용	효성부동 산컨설팅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길 37-1 (경장동)		20220623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대우합판 목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62-13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2길 38 (조촌동)	20220621		20100125	행정동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384-9	전라북도 군산시 동팔마길 44-5 (대명동)	20220621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493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5길 17 (미장동)	20220705	건물 신축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장길 47-6		20220620	건물 신축	20070528	오곡리 신장 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362-2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용회 길 6	20220704	건물 신축	20100125	서수리 용회 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오곡리 341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신장 길 47-6	20220704	건물 신축	20070528	오곡리 신장 마을 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869-13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13 (나운동)	20220620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내홍동 320-4, 288-1, 288-4, 289-1, 289-2, 289-3, 289-7, 289-8, 289-9, 290-1, 291-13, 306-2, 306-3, 306-14, 306-22, 306-23, 319-1, 319-3, 320-1, 320-3, 320-5, 320-6, 320-7, 320-8, 320-14, 320-15, 320-16,	전라북도 군산시 사옥안1길 29 (내홍동)	20220704	건물 신축	20211215	사옥마을의 명칭을 방향성으 로 부여	

	320-17, 320-18, 320-19, 321-1, 321-5, 321-13, 464-10, 464-18, 464-19, 484, 484-3, 484-9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1064-14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오산 로 118-61	20220617		20100125	익산시 오산면에 이르는 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342-2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원서 포길 33	20220615		20100125	서포리 원서포 마을소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원우리 553-7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구울3 길 12-4	20220629	건물 신축	20070528	마을 지명인용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향교길 25-10		20220614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529-23	전라북도 군산시 부골1길 43-3 (조촌동)	20220628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폐지	전라북도 군산시 부골1길 43-3 (조촌동)		20220614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381-1, 381-4, 383, 384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임피 성안길 27-10	20220628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외산3길 20-18 (구암동)	전라북도 군산시 외산3길 20-16 (구암동)	20220613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분할	전라북도 군산시 외산3길 20-18 (구암동)	전라북도 군산시 외산3길 20-18 (구암동)	20110729		20100125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739-1	전라북도 군산시 상신안길 56-2 (나운동)	20220624	건물 신축	20100125	지명으로 방향성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옥석리 161-8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남내 로 289-72	20220623		20100125	마을명칭인용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381-85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서로 152-4 (미장동)	20220609		20100125	미장동의 서쪽도로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631, 632, 633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 로 43-10	20220609		20090710	항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반 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28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1길 14-1 (미장동)	20220610	건물 신축	20150127	지명으로 서수식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부여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122-1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여방1 길 108	20220610	건물 신축	20070528	마을명칭에서 서수번호사용	

군산시 고시 제2022-9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07. 08.

군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68	20	집산 도로	398	중로 1-42	중로 1-41	일반 도로	-	건설부743 (’91.12.7)	
변경	중로	1	68	20~23	집산 도로	398 (123)	중로 1-42	중로 1-41	일반 도로	-	"	
기정	중로	1	69	20	집산 도로	398	중로 1-42	중로 1-41	일반 도로	-	건설부743 (’91.12.7)	
변경	중로	1	69	20~23	집산 도로	398 (223)	중로 1-42	중로 1-41	일반 도로	-	"	

※ ()는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68	중로 1-68	일부 구간 폭원 변경 - B=20m → 20m~23m(증 3m)	공동주택으로의 진출입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변경
중로 1-69	중로 1-69	일부 구간 폭원 변경 - B=20m → 20m~23m(증 3m)	공동주택으로의 진출입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 구간 폭원 변경

2.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2-99호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07. 08.

군 산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2	군산 신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내홍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1,081,806.1	전북고시425 '09.12.31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1,081,806.1	100.0
주거지역	소계	740,280.8	68.4
	제1종일반주거지역	171,807.9	15.9
	제2종일반주거지역	103,872.7	9.6
	제3종일반주거지역	448,293.6	41.4
	준주거지역	16,306.6	1.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9,872.7	15.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71,652.6	15.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22	17,447.0	237,052.6	26	6,453.0	79,100.9	64	7,391.5	96,945.1	32	3,602.5	61,006.6
	변경	122	17,447.0	237,142.6	26	6,453.0	79,100.9	64	7,391.5	97,005.1	32	3,602.5	61,036.6
대로	기정	4	4,011.0	66,846.5	1	2,040.0	7,870.0	1	639.0	21,474.5	2	1,332.0	37,502.0
중로	기정	24	6,479.0	111,129.6	5	2,357.0	50,428.9	11	2,510.0	39,770.0	8	1,612.0	20,930.7
	변경	24	6,479.0	111,189.6	5	2,357.0	50,428.9	11	2,510.0	39,830.0	8	1,612.0	20,930.7
소로	기정	60	5,866.0	52,340.4	14	1,786.0	18,097.0	41	3,981.0	33,603.4	5	99.0	640.0
소로 (특)	기정	34	1,091.0	6,736.1	6	270.0	2,705.0	11	261.5	2,097.2	17	559.5	1,933.9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4	35~41	주간선 도로	2,040	조촌동 대로1-1	광로2-2 유원지구역계	일반도로		건고228 '86.5.23	
기정	대로	2	26	30	보조간선 도로	639	대로1-4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대로	3	38	26	집산도로	685	대로1-4	대로2-2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대로	3	39	26	집산도로	647	중로1-105	대로2-2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 '09.12.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05	20	집산도로	1,052	대로1-4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1	106	20	집산도로	309	대로1-4	대로3-3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1	107	20	집산도로	200	근린공원38호	대로3-3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1	108	20	집산도로	215	대로2-26	중로1-10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1	109	20	집산도로	581	대로2-26	중로1-105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2	151	15	집산도로	215	대로3-38	중로2-185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52	15	집산도로	253	대로1-4	중로1-10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53	15	집산도로	42	중로1-108	중로3-7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54	15	집산도로	43	대로3-38	중로3-7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55	15	집산도로	42	대로3-38	중로3-8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56	15	집산도로	219	대로2-26	중로1-10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57	15	집산도로	259	대로2-26	중로2-16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58	15	집산도로	211	중로1-109	중로3-83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59	15.5	집산도로	222	대로3-39	중로1-10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60	15.0~15.5	집산도로	250	대로3-39	소로2-102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중로	2	185	15	집산도로	754	대로1-4	중로1-10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변경	중로	2	185	15	집산도로	754	대로1-4	중로1-10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선형변경
기정	중로	3	77	13	집산도로	259	중로1-108	중로1-1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3	78	13	집산도로	58	중로1-108	중로3-77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3	79	13	집산도로	495	소로2-1012	소로2-1012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3	80	13	집산도로	268	중로2-156	중로2-15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3	81	12	집산도로	123	대로3-38	중로2-185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3	82	12	집산도로	103	중로2-157	소로2-1020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3	83	12	집산도로	280	중로1-105	소로1-445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중로	3	84	12	집산도로	26	중로1-105	소로1-44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4.06.09	
기정	소로	1	440	10	집산도로	189	소로1-447	소로2-99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소로	1	441	10	집산도로	24	중로2-185	소로1-44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기정	소로	1	442	10	집산도로	22	중로2-185	소로1-44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9.12.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43	10	집산도로	85	중로2-185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4	10	집산도로	85	중로2-185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5	10	집산도로	217	중로3-83	소로2-1013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6	10	집산도로	313	대로3-39	중로1-105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7	10	국지도로	127	소로3-781	소로2-994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8	10	국지도로	252	소1-443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49	10	국지도로	133	소로1-443	소로1-444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50	10	국지도로	106	중로3-82	소로2-102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51	10	국지도로	106	중로2-160	중로3-82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52	10	국지도로	58	소로1-445	소로2-1013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1	453	10	국지도로	69	중로3-83	소로2-1016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88	8	국지도로	105	소로1-440	소로3-782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89	8~9	국지도로	255	소로1-440	소로1-44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0	9	국지도로	67	소로1-440	소로2-98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1	9	국지도로	144	소로1-447	소로2-99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2	9	국지도로	29	소로2-991	소로2-989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3	9	국지도로	29	소로1-440	소로2-991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4	9	국지도로	180	소로1-440	소로1-44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5	8	국지도로	20	중로3-77	소(특)2-1030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6	8	국지도로	19	중로3-77	소(특)2-1031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7	8	국지도로	22	중로3-80	소(특)2-1032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8	8	국지도로	22	중로3-80	소(특)2-1033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999	8	국지도로	27	중로1-105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1000	8	국지도로	10	중로1-105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1001	9	국지도로	29	소로1-440	소로2-994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2	1002	9	국지도로	52	소로1-448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3	9	국지도로	52	소로1-448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4	8	국지도로	53	소로1-448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05	8	국지도로	53	소로1-448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6	8	국지도로	53	소로1-449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7	8	국지도로	53	소로1-449	소로2-100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8	8~9	국지도로	425	소로1-444	소로1-44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09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0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7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1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2	8	국지도로	20	중로3-79	소(특)2-1039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3	8	국지도로	234	소로1-452	소로1-445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4	8	국지도로	43	소로1-445	소로2-101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5	8	국지도로	87	소로1-452	소로2-1014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6	8	국지도로	263	중로3-83	소로1-45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7	8	국지도로	170	소로1-453	소로2-101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8	8	국지도로	33	소로2-1017	소로2-1016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19	8	국지도로	35	중로3-83	소로2-1017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0	8	국지도로	335	중로2-160	중로2-157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1	8	국지도로	106	중로3-82	소로2-1020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2	8	국지도로	106	중로2-160	중로3-82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3	8	국지도로	262	소로1-446	소로2-1028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4	8	국지도로	71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5	8	국지도로	88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6	8	국지도로	106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7	8	국지도로	123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2	1028	8	국지도로	141	소로1-446	소로2-1023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3	781	7	국지도로	8	소로1-447	소(특)3-787	일반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로	3	782	6	국지도로	16	소로2-98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3	783	6	국지도로	19	소로2-100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로	3	784	6	국지도로	24	소로2-100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785	6	국지도로	32	소로2-1028	동측지구계	일반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4	10	특수도로	42	중로1-106	중로3-7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1	455	10	특수도로	40	중로3-79	36호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6	10	특수도로	39	중로3-79	36호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7	10	특수도로	40	중로3-79	36호광장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8	10	특수도로	40	대로2-26	중로3-7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1	459	10	특수도로	69	중로2-156	중로3-80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29	8	특수도로	42	대로1-4	중로2-152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0	8	특수도로	22	중로1-106	소로2-995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1	8	특수도로	24	대로2-26	소로2-99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2	8	특수도로	17	중로1-107	소로2-99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3	8	특수도로	18	대로2-26	소로2-998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2	1034	8	특수도로	25	대로1-4	소로2-98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5	8	특수도로	37	중로2-152	근린공원37호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6	8	특수도로	19	중로1-108	소로2-100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7	8	특수도로	19	중로1-108	소로2-1010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8	8	특수도로	19	중로1-106	소로2-101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2	1039	8	특수도로	20	대로2-26	소로2-1012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86	6	특수도로	27	대로1-4	소로2-989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87	7	특수도로	19	대로1-4	소로3-78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88	6	특수도로	24	중로2-185	소로1-44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89	6	특수도로	22	중로2-185	소로1-448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90	6	특수도로	15	대로2-26	소로1-445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91	6	특수도로	15	대로1-4	소로2-1013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92	6	특수도로	19	대로1-4	소로2-101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425'0 9.12.31	
기정	소특	3	793	6	특수도로	25	중로1-105	소로2-101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94	6	특수도로	26	중로1-105	소로1-44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95	2.5	특수도로	29	소로2-989	소로2-99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특	3	797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3	소로2-1024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98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4	소로2-1025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799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5	소로2-1026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800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6	소로2-1027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801	2.5	특수도로	30	소로2-1027	소로2-1028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164'1 4.06.09	
기정	소특	3	802	2	특수도로	97	중로1-107	내흥동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239'1 6.12.08	
기정	소특	3	803	2	특수도로	92	대로2-26	내흥동475-1	보행자 전용도로		전북고시239'1 6.12.08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85	중로2-185	· 선형변경	· DIBL 공동주택용지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선형변경

(2)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9개소	13,023.5		
기정	95	주차장	내홍동 1027	1,358.5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96	주차장	내홍동 912-1	1,794.7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97	주차장	내홍동 1034	1,927.5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98	주차장	내홍동 1035	1,930.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99	주차장	내홍동 1044	3,430.8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00	주차장	내홍동 1057	515.4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01	주차장	내홍동 1070	550.3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02	주차장	내홍동 989	484.7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1	주차장	내홍동 1007	1,031.6	전북고시425 '09.12.31	

2) 공간시설(변경없음)

(1)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4개소	7,204.7		
기정	34	광장	역전광장	내홍동 1049	1,360.1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35	광장	경관광장	내홍동 932	1,250.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36	광장	경관광장	내홍동 1037	2,146.1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37	광장	경관광장	내홍동 952	2,448.5	전북고시164 '14.06.09	

(2)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9개소	157,741.4		
소계				1개소	13,087.7		
기정	36	역사 공원	역사 공원	내 흥동 976	13,087.7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소계				4개소	139,365.4		
기정	37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내 흥동 1021	52,493.1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기정	38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내 흥동 1014	13,644.1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기정	39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내 흥동 1064	12,388.9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기정	40	근린 공원	근린 공원	내 흥동 1067	60,839.3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소계				1개소	2,500.0		
기정	53	53호 공원	어린이 공원	내 흥동 996	2,500.0	전북고시425 '09.12.31	자연녹지지역
소계				3개소	2,788.3		
기정	8	공원	소공원	내 흥동 1008	1,031.1	전북고시425 '09.12.31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9	공원	소공원	내 흥동 915-1	595.2	전북고시164 '14.06.09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10	공원	소공원	내 흥동 1073	1,162.0	전북고시164 '14.06.09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역사공원 36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087.70	-	300.00	600.00	
시설계			4,126.42	-	300.00	600.00	시설율 31.53%
기반시설	소 계		3,078.45	-	-	-	
		도로(소계)	1,920.79	-	-	-	
		광장(소계)	1,157.66	-	-	-	
	1	광장1	101.64	-	-	-	
	2	광장2	859.63	-	-	-	
	3	광장3	196.39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스탠드	-	53.00m	-	-	
	B	조형부조	-	30.40m	-	-	
	C	이야기담장	-	1식	-	-	
	D	앉음벽	-	12.0m	-	-	
휴양시설	소 계		142.88	-	-	-	
	1	휴게소1	142.88	-	-	-	
	E	파고라B	-	1개소	-	-	
	F	파고라D	-	1개소	-	-	
	G	야외테이블A	-	11개소	-	-	
	H	등의자	-	5개소	-	-	
교양시설	소 계		480.09	-	-	-	
	1	전시장1	46.27	-	-	-	
	2	전시장2	143.36	-	-	-	
	3	전시장3	117.24	-	-	-	
	4	전시장4	173.22	-	-	-	
	I	조형물	-	3개소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 계		425.00	-	300.00	600.00	
	J	종합안내판	-	1개소	-	-	
	K	공간안내판	-	5개소	-	-	
	L	방향안내판	-	4개소	-	-	
	M	휴지통	-	1개소	-	-	
	N	관리사무소	425.00	-	300.00	600.00	
녹지계			8,961.28	-	-	-	
녹지및기타	소 계		8,961.28	-	-	-	
		녹 지	8,961.28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중 점
계					1,920.79	-	-	-
소 로	소 계				1,920.79	-	-	-
	3	진-1	3	9.34	31.42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1 (소)
	3	연-1	4	231.5	1,038.74	연결로	광장1	전시장4
	3	연-2	4	21.38	96.46	연결로	연-3 (소)	연-1 (소)
	3	연-3	4	67.02	277.76	연결로	연-1 (소)	전시장2
	3	연-4	4	38.25	153.27	연결로	전시장2	광장2
	3	연-5	4	46.87	196.24	연결로	광장2	연-1 (소)
	3	관-1	5	25.55	126.9	관리도로	동측경계부	전기공급시설

▶ 근린공원 37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52,493.10	-	75.00	75.00	
시설계			3,764.39	-	75.00	75.00	시설율 7.17%
기반시설	소 계		3,352.40	-	-	-	
		도로(소계)	2,743.18	-	-	-	
		광장(소계)	609.22	-	-	-	
	1	광장	163.87	-	-	-	
	2	광장	53.86	-	-	-	
	3	광장	41.91	-	-	-	
	4	광장	122.51	-	-	-	
	5	광장	144.86	-	-	-	
	6	광장	82.21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파고라E	-	5개소	-	-	
	B	파고라B	-	1개소	-	-	
	C	파고라D	-	1개소	-	-	
	D	야외테이블B	-	2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219.11	-	-	-	
	1	휴게소1	102.59	-	-	-	
	2	휴게소2	75.76	-	-	-	
	3	휴게소3	40.76	-	-	-	
	E	평의자B	-	15개소	-	-	
	F	등의자	-	18개소	-	-	
운동시설	소 계		192.88	-	-	-	
	1	체력단련장1	56.14	-	-	-	
	2	체력단련장2	48.34	-	-	-	
	3	체력단련장3	88.40	-	-	-	
	G	체력단련시설A	-	1개소	-	-	
	H	체력단련시설B	-	1개소	-	-	
	I	체력단련시설C	-	1개소	-	-	
	J	체력단련시설D	-	1개소	-	-	
	K	체력단련시설E	-	1개소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L	체력단련시설F	-	1개소	-	-	
	M	체력단련시설G	-	2개소	-	-	
	N	체력단련시설H	-	2개소	-	-	
편익시설	소 계		-	-	75.00	75.00	
	①	주차장	-	-	-	-	
	②	화장실	-	1개소	75.00	75.00	
	O	계 단A	-	1개소	-	-	
	P	계 단B	-	1개소	-	-	
	Q	계 단C	-	1개소	-	-	
	R	종합안내판	-	1개소	-	-	
	S	공간안내판	-	3개소	-	-	
	T	방향안내판	-	6개소	-	-	
	U	휴지통	-	3개소	-	-	
녹지계			48,728.71	-	-	-	
녹지및기타	소 계		48,728.71	-	-	-	
		녹 지	48,728.71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계					2,743.21	-	-	-
소 로	소 계				2,743.21	-	-	-
	3	진-1	2	394.75	804.99	진입로	북측경계부	광장1
	3	진-2	3	86.85	315.91	진입로	남측경계부	광장4
	3	진-3	3	69.30	209.12	진입로	남측경계부 (화장실)	광장4
	3	연-1	3	17.66	64.33	연결로	진-3	진-2
	3	연-2	3	20.25	63.07	연결로	광장6	진-3
	3	연-3	3	14.67	47.35	연결로	광장6	진-3
	3	산-1	2	91.89	167.32	산책로	광장3	진-1
	3	산-2	2	148.41	317.11	산책로	진-1	진-1
	3	산-3	2	45.48	94.62	산책로	광장2	산-2
	3	산-4	2	131.41	277.35	산책로	산-2	산-5
	3	산-5	2	149.59	332.77	산책로	광장4	진-1
	3	산-6	2	21.99	49.24	산책로	체력단련장3	산-5

▶ 근린공원 38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3,644.10	-	-	-	
시설계			5,376.08	-	-	-	시설율 39.40%
기반시설	소 계		3,904.70	-	-	-	
		도로(소계)	1,263.65	-	-	-	
		광장(소계)	2,641.05	-	-	-	
	1	광장1	36.98	-	-	-	
	2	광장2	341.37	-	-	-	
	3	광장3	2,262.70	-	-	-	
휴양시설	소 계		366.03	-	-	-	
	1	휴게소1	55.89	-	-	-	
	2	휴게소2	310.14	-	-	-	
	A	파고라D	-	2개소	-	-	
	B	야외테이블A	-	3개소	-	-	
	C	야외테이블B	-	6개소	-	-	
	D	등의자	-	23개소	-	-	
유희시설	소 계		638.02	-	-	-	
	1	놀이터	638.02	-	-	-	
	E	비단물결 놀이대	-	1개소	-	-	
	F	그네	-	1개소	-	-	
	G	시소	-	2개소	-	-	
	H	별집모래놀이	-	1개소	-	-	
	I	별꽃모래놀이	-	1개소	-	-	
	J	흔들놀이A	-	1개소	-	-	
	K	흔들놀이B	-	1개소	-	-	
	L	흔들놀이C	-	1개소	-	-	
운동시설	소 계		467.33	-	-	-	
	1	체력단련실	467.33	-	-	-	
	M	배드민턴네트 및 포스트	-	2개소	-	-	
	N	농구대	-	1개소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편익시설	소 계		-	-	-	-	
	O	종합안내판	-	1개소	-	-	
	P	공간안내판	-	3개소	-	-	
	Q	방향안내판	-	2개소	-	-	
	R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	
	S	휴지통	-	3개소	-	-	
녹지계			8,268.02	-	-	-	
녹지및기타	소 계		8,268.02	-	-	-	
		녹 지	8,268.02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263.65	-	-	-
소 로	소 계				1,263.65	-	-	-
	3	진-1	4	186.81	772.56	진입로	광장2	남측경계부
	3	진-2	4	14.41	59.35	진입로	광장1	연-2(소)
	3	연-1	4	51.02	224.59	연결로	광장2	광장3
	3	연-2	2	102.41	207.15	연결로	진-1(소)	진-1(소)

▶ 근린공원 39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2,388.90	-	-	-	
시설계			4,922.62	-	-	-	시설율 39.73%
기반시설	소 계		1,967.94	-	-	-	
		도로(소계)	1,707.25	-	-	-	
		광장(소계)	260.69	-	-	-	
	1	광장1	144.63	-	-	-	
	2	광장2	64.63	-	-	-	
	3	광장3	51.43	-	-	-	
휴양시설	소 계		146.72	-	-	-	
	1	휴게소1	103.50	-	-	-	
	2	휴게소2	43.22	-	-	-	
	A	파고라A	-	1개소	-	-	
	B	파고라D	-	2개소	-	-	
	C	야외테이블A	-	3개소	-	-	
	D	등의자	-	29개소	-	-	
유희시설	소 계		239.74	-	-	-	
	1	놀이터	239.74	-	-	-	
	E	숫대놀이대	-	1개소	-	-	
	F	인디언놀이집	-	1개소	-	-	
	G	통나무그네	-	1개소	-	-	
운동시설	소 계		68.22	-	-	-	
	1	체력단련실	68.22	-	-	-	
	H	체력단련시설A	-	1개소	-	-	
	I	체력단련시설B	-	1개소	-	-	
	J	체력단련시설C	-	1개소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 계		2,500.00	-	-	-	
	1	도서관	2,500.00	-	-	-	
관리시설	소 계		-	-	-	-	
	K	종합안내판	-	1개소	-	-	
	L	공간안내판	-	2개소	-	-	
	M	방향안내판	-	3개소	-	-	
	N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	
	S	휴지통	-	2개소	-	-	
녹지계			7,466.28	-	-	-	
녹지및기타	소 계		7,466.28	-	-	-	
		녹 지	7,466.28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707.25	-	-	-
소로	소 계				1,707.25	-	-	-
	3	진-1	3	4.99	20.85	진입로	남측경계부	연-1(소)
	3	진-2	3	8.92	31.07	진입로	남측경계부	연-1(소)
	3	진-3	4	23.45	191.00	진입로	광장2	연-1(소)
	3	진-4	3	114.64	81.80	진입로	연-1(소)	연-2(소)
	3	진-5	3	14.42	71.59	진입로	연-1(소)	연-2(소)
	3	진-6	2	16.07	32.14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2(소)
	3	연-1	3	290.69	877.32	연결로	광장1	광장3
	3	연-2	4	95.61	351.86	연결로	진-6(소)	놀이터
	3	연-3	2	18.62	37.23	연결로	연-2(소)	휴게소1
	3	연-4	2	6.15	12.23	연결로	휴게소1	연-1(소)

▶ 근린공원 40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60,839.30	-	-	-	
시설계			2,790.99	-	-	-	시설율 4.59%
기반시설	소 계		2,301.15	-	-	-	
		도로(소계)	1,989.66	-	-	-	
		광장(소계)	311.49	-	-	-	
	1	광장1	240.54	-	-	-	
	2	광장2	70.95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파고라C	-	1개소	-	-	
	B	파고라E	-	2개소	-	-	
	C	야외테이블B	-	2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92.44	-	-	-	
	1	휴게소1	92.44	-	-	-	
	D	등의자	-	19개소	-	-	
	E	평의자A	-	1개소	-	-	
	F	평의자B	-	9개소	-	-	
	G	평상	-	6개소	-	-	
운동시설	소 계		383.89	-	-	-	
	1	체력단련장1	136.73	-	-	-	
	2	체력단련장2	247.16	-	-	-	
	H	체력단련시설A	-	1개소	-	-	
	I	체력단련시설B	-	1개소	-	-	
	J	체력단련시설C	-	1개소	-	-	
	K	체력단련시설D	-	1개소	-	-	
	L	체력단련시설E	-	1개소	-	-	
	M	체력단련시설F	-	1개소	-	-	
	N	체력단련시설G	-	1개소	-	-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 계		13.51	-	-	-	
	1	숲속학습장	13.51	-	-	-	
관리시설	소 계		-	-	-	-	
	O	계단D	-	1개소	-	-	
	P	계단E	-	1개소	-	-	
	Q	종합안내판	-	1개소			
	R	공간안내판	-	4개소	-	-	
	S	방향안내판	-	4개소	-	-	
	T	휴지통	-	2개소	-	-	
녹지계			58,048.31	-	-	-	
녹지및기타	소 계		58,048.31	-	-	-	
		녹 지	58,048.31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중 점
계					1,989.66	-	-	-
소 로	소 계				1,989.66	-	-	-
	3	산-1	2	448.47	902.24	산책로	광장2	북측경계부
	3	산-2	2	117.91	250.68	산책로	광장1	산-1(소)
	3	산-3	2	107.42	219.51	산책로	남측경계부	산-7(소)
	3	산-4	1.5	87.58	142.90	산책로	산-1(소)	산-1(소)
	3	산-5	1.5	57.68	96.03	산책로	산-1(소)	산-4(소)
	3	산-6	1.5	53.24	89.17	산책로	산-1(소)	체력단련장1
	3	산-7	2	131.30	289.13	산책로	산-1(소) (숲속학습장)	산-1(소)

▶ 어린이공원 53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2,500.00	-	-	-	
시설계			1,301.51	-	-	-	시설율52.06%
기반시설	소 계		701.64	-	-	-	
		도로(소계)	489.65	-	-	-	
		광장(소계)	211.99	-	-	-	
	1	광장1	211.99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앉음벽	-	1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42.15	-	-	-	
	1	휴게소1	42.15	-	-	-	
	B	원형과고라	-	7개소	-	-	
	C	야외테이블A	-	4개소	-	-	
	D	등의자	-	4개소	-	-	
	E	통나무의자	-	5개소	-	-	
유희시설	소 계		557.72	-	-	-	
	1	어린이놀이터	503.96	-	-	-	
	2	모래놀이장	53.76	-	-	-	
	F	스텝놀이시설	-	1개소	-	-	
	G	구불구불놀이대	-	1개소	-	-	
	H	경사슬라이드	-	1개소	-	-	
	I	언던네트오르기	-	1개소	-	-	
	J	마운딩흔들다리건너기	-	1개소	-	-	
	K	튜브터널통과하기	-	1개소	-	-	
	L	암벽오르기	-	1개소	-	-	
	M	마운딩통과하기	-	1개소	-	-	
	N	모래놀이집	-	1개소	-	-	
관리시설	소 계		-	-	-	-	
	O	종합안내판	-	1개소	-	-	
	P	공간안내판	-	3개소	-	-	
	Q	방향안내판	-	2개소	-	-	
	R	놀이터안내판	-	1개소	-	-	
	S	휴지통	-	1개소	-	-	
녹지계			1,198.49	-	-	-	
녹지및기타	소 계		1,198.49	-	-	-	
		녹 지	1,198.49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계					489.65	-	-	-
소로	소 계				489.65	-	-	-
	3	진-1	3	150.92	31.06	진입로	좌측경계부	연-1(소)
	3	연-1	2	15.91	458.05	연결로	-	-

▶ 소공원 8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031.10	-	-	-	
시설계			204.97	-	-	-	시설율 19.88%
기반시설	소 계		144.82	-	-	-	
		도로(소계)	144.82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파고라D	-	1개소	-	-	
	B	디딤석포장B	-	23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36.00	-	-	-	
		가로쉼터	36.00	-	-	-	
운동시설	소 계		24.15	-	-	-	
		체력단련장	24.15	-	-	-	
	C	체력단련시설D	-	1개소	-	-	
	D	체력단련시설E	-	1개소	-	-	
녹지계			826.13	-	-	-	
녹지및기타	소 계		826.13	-	-	-	
		녹 지	826.13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44.82	-	-	-
소 로	소 계				144.82	-	-	-
	3	진-1	1.5	20.87	36.57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1(소)
	3	연-1	2.0	40.97	108.25	연결로	북측경계부	남측경계부

▶ 소공원 9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 축 면 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595.20	-	-	-	
시설계			118.20	-	-	-	시설율19.86%
기반시설	소 계		118.20	-	-	-	
		도로(소계)	118.20	-	-	-	
		광장(소계)	-	-	-	-	
조경시설	소 계		-	-	-	-	
	1-1	조형가벽A	-	1개소	-	-	
	1-2	조형가벽B	-	1개소	-	-	
	1-3	조형가벽C	-	1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	-	-	-	
	2-1	등의자	-	4개소	-	-	
녹지계			477.00	-	-	-	
녹지및기타	소 계		477.00	-	-	-	
		녹 지	477.00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계					118.20	-	-	-
소 로	소 계				118.20	-	-	-
	3	진-1	2.0	21.26	45.20	진입로	서측경계부	동측경계부
	3	진-2	1.5	23.53	40.00	진입로	서측경계부	동측경계부
	3	연-1	2.0	15.20	33.00	연결로	진-1(소)	진-2(소)

▶ 소공원 10호 결정 조서(변경없음)

- 시설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건 축 면 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162.00	-	-	-	
시설계			189.11	-	-	-	시설율16.27%
기반시설	소 계		129.34	-	-	-	
		도로(소계)	129.34	-	-	-	
조경시설	소 계		-	-	-	-	
	A	파고라D	-	1개소	-	-	
	B	디딤석포장B	-	32개소	-	-	
휴양시설	소 계		20.24	-	-	-	
		가로쉼터	20.24	-	-	-	
운동시설	소계		39.53	-	-	-	
		체력단련장	39.53	-	-	-	
	C	체력단련시설F	-	1개소	-	-	
	D	체력단련시설G	-	1개소	-	-	
	E	체력단련시설H	-	1개소	-	-	
녹지계			972.89	-	-	-	
녹지및기타	소 계		972.89	-	-	-	
		녹 지	972.89	-	-	-	

- 도로조서(변경없음)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중 점
계					125.34	-	-	-
소 로	소 계				125.34	-	-	-
	3	진-1	1.5	15.77	40.35	진입로	동측경계부	연-1(소)
	3	연-1	2.0	39.40	88.99	연결로	북측경계부	남측경계부

(3)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22개소	64,365.3		
기정	119	녹지	연결녹지	내홍동 967	4,810.2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0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95	13,090.6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1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79	1,107.5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2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86	689.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3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20	4,361.4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4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12	2,781.1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5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92	235.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6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43	1,701.3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7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62	1,089.8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8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44	2,790.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29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97	798.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0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51	11,821.1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1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61	1,048.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2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83	850.0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3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79	5,757.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34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1013	2,059.8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5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75	1,599.2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6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41	1,915.1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7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46	1,453.5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8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54	1,489.9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39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56	2,372.6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140	녹지	완충녹지	내홍동 963	541.6	전북고시164 '14.06.09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8개소	12,974.5		
기정	15	공공공지	내흥동 1022	216.4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6	공공공지	내흥동 931	159.8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7	공공공지	내흥동 933	220.2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8	공공공지	내흥동 1024	175.6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19	공공공지	내흥동 999-1	290.9	전북고시164 '14.06.09	
기정	20	공공공지	내흥동 1084 일원	6,088.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1	공공공지	내흥동 970 일원	5,322.3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2	공공공지	내흥동 964	500.4	전북고시425 '09.12.31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400.0		
기정	17	전기공급시설	내흥동 977	400.0	전북고시425 '09.12.31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고시일	비고
합계				4개소	42,574.6		
기정	10	학교	유치원	내흥동 1059	5,000.8	전북고425 '09.12.31	
기정	17	학교	초등학교	내흥동 998	9,401.0	군교공3 '88.3.5	
기정	15	학교	초등학교	내흥동 1063	15,001.6	전북고425 '09.12.31	
기정	9	학교	중학교	내흥동 1060	13,171.2	전북고425 '09.12.31	

(2)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4개소	9,921.2		
기정	22	공공청사	공공청사	내홍동 1016-2	3,021.5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3	공공청사	우체국	내홍동 1015-2	1,103.9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4	공공청사	파출소	내홍동 1016-1	3,794.8	전북고시425 '09.12.31	
기정	25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내홍동 1015-1	2,001.0	전북고시425 '09.12.31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하수도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합계			1개소	699.5		
변경	4	오수 펌프장	내홍동 923	699.5	전북고시425 '09.12.31	

②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73,994.8	-	-	73,994.8	
E	1	1,785.0	-1	내홍동 980-1	255.0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홍동 980-2	255.0	
			-3	내홍동 980-3	255.0	
			-4	내홍동 980-4	255.0	
			-5	내홍동 980-5	255.0	
			-6	내홍동 980-6	255.0	
			-7	내홍동 980-7	255.0	
E	2	1,855.3	-1	내홍동 981-1	227.2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2	내 흥 동 981-2	241.1	
			-3	내 흥 동 981-3	241.0	
			-4	내 흥 동 981-4	235.5	
			-5	내 흥 동 981-5	226.4	
			-6	내 흥 동 981-6	232.4	
			-7	내 흥 동 981-7	232.5	
			-8	내 흥 동 981-8	219.2	
E	3	2,103.2	-1	내 흥 동 985-1	257.3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 흥 동 985-8	270.1	
			-3	내 흥 동 985-7	270.0	
			-4	내 흥 동 985-6	255.5	
			-5	내 흥 동 985-5	254.8	
			-6	내 흥 동 985-4	269.5	
			-7	내 흥 동 985-3	269.3	
			-8	내 흥 동 985-2	256.7	
E	4	2,140.8	-1	내 흥 동 984-1	256.9	
			-2	내 흥 동 984-8	270.1	
			-3	내 흥 동 984-7	270.0	
			-4	내 흥 동 984-6	255.8	
			-5	내 흥 동 984-5	264.6	
			-6	내 흥 동 984-4	278.8	
			-7	내 흥 동 984-3	278.9	
			-8	내 흥 동 984-2	265.7	
E	5	2,103.1	-1	내 흥 동 983-1	265.8	
			-2	내 흥 동 983-8	279.4	
			-3	내 흥 동 983-3	260.4	
			-4	내 흥 동 983-2	246.2	
			-5	내 흥 동 983-7	278.8	
			-6	내 흥 동 983-6	264.4	
			-7	내 흥 동 983-5	247.4	
			-8	내 흥 동 983-4	260.7	
E	6	1,001.0	-1	내 흥 동 987-1	252.0	
			-2	내 흥 동 987-2	252.0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E	7	1,112.1	-3	내 흥 동 987-3	252.0	
			-4	내 흥 동 987-4	245.0	
			-1	내 흥 동 988-1	271.4	
			-2	내 흥 동 988-4	284.7	
			-3	내 흥 동 988-3	284.6	
			-4	내 흥 동 988-2	271.4	
E	8	1,699.7	-1	내 흥 동 990-1	272.0	
			-2	내 흥 동 990-6	285.5	
			-3	내 흥 동 990-5	278.7	
			-4	내 흥 동 990-4	287.5	
			-5	내 흥 동 990-3	294.7	
			-6	내 흥 동 990-2	281.3	
E	9	1,672.4	-1	내 흥 동 991-1	282.4	
			-2	내 흥 동 991-6	295.3	
			-3	내 흥 동 991-5	288.5	
			-4	내 흥 동 991-4	268.4	
			-5	내 흥 동 991-3	275.2	
			-6	내 흥 동 991-2	262.6	
E	10	1,304.7	-1	내 흥 동 1003-1	425.8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 흥 동 1003-2	430.3	
			-3	내 흥 동 1003-3	448.6	
E	11	1,901.7	-1	내 흥 동 1004-1	238.8	
			-2	내 흥 동 1004-2	245.2	
			-3	내 흥 동 1004-3	244.8	
			-4	내 흥 동 1004-4	220.7	
			-5	내 흥 동 1004-5	221.5	
			-6	내 흥 동 1004-6	245.6	
			-7	내 흥 동 1004-7	245.8	
			-8	내 흥 동 1004-8	239.3	
E	12	2,119.0	-1	내 흥 동 1005-1	263.5	
			-2	내 흥 동 1005-2	270.1	
			-3	내 흥 동 1005-3	269.9	
			-4	내 흥 동 1005-4	243.8	
			-5	내 흥 동 1005-5	249.6	
			-6	내 흥 동 1005-6	276.2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E			-7	내홍동 1005-7	276.3	
			-8	내홍동 1005-8	269.6	
	13	2,088.3	-1	내홍동 1006-1	258.1	
			-2	내홍동 1006-2	264.5	
			-3	내홍동 1006-3	264.3	
			-4	내홍동 1006-4	257.8	
			-5	내홍동 1006-5	257.3	
			-6	내홍동 1006-6	264.0	
			-7	내홍동 1006-7	264.3	
			-8	내홍동 1006-8	258.0	
	14	2,001.3	-1	내홍동 1009-1	246.7	
			-2	내홍동 1009-2	253.2	
			-3	내홍동 1009-3	253.2	
			-4	내홍동 1009-4	247.3	
			-5	내홍동 1009-5	247.3	
			-6	내홍동 1009-6	253.2	
			-7	내홍동 1009-7	253.4	
			-8	내홍동 1009-8	247.0	
	15	2,040.4	-1	내홍동 1010-1	252.0	
			-2	내홍동 1010-2	258.5	
			-3	내홍동 1010-3	258.3	
			-4	내홍동 1010-4	252.0	
			-5	내홍동 1010-5	251.5	
			-6	내홍동 1010-6	257.9	
			-7	내홍동 1010-7	258.3	
			-8	내홍동 1010-8	251.9	
E	16	2,039.3	-1	내홍동 1011-1	251.9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홍동 1011-2	258.5	
			-3	내홍동 1011-3	258.5	
			-4	내홍동 1011-4	252.1	
			-5	내홍동 1011-5	251.1	
			-6	내홍동 1011-6	257.7	
			-7	내홍동 1011-7	258.0	
			-8	내홍동 1011-8	251.5	
E	17	3,287.5	-1	내홍동 914-1	264.7	
			-2	내홍동 914-10	303.5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3	내 흥 동 914-9	356.3	
			-4	내 흥 동 914-8	374.0	
			-5	내 흥 동 914-7	351.3	
			-6	내 흥 동 914-6	332.8	
			-7	내 흥 동 914-5	354.1	
			-8	내 흥 동 914-4	344.9	
			-9	내 흥 동 914-3	301.5	
			-10	내 흥 동 914-2	304.4	
E	18	1,760.0	-1	내 흥 동 915-7	278.5	
			-2	내 흥 동 915-6	305.2	
			-3	내 흥 동 915-5	312.5	
			-4	내 흥 동 915-4	294.3	
			-5	내 흥 동 915-3	291.3	
			-6	내 흥 동 915-2	278.2	
E	19	1,276.1	-1	내 흥 동 916-1	248.1	
			-2	내 흥 동 916-2	260.4	
			-3	내 흥 동 916-3	260.1	
			-4	내 흥 동 916-4	260.0	
			-5	내 흥 동 916-5	247.5	
E	20	2,479.1	-1	내 흥 동 918-1	272.0	
			-2	내 흥 동 918-8	313.2	
			-3	내 흥 동 918-7	327.5	
			-4	내 흥 동 918-6	325.1	
			-5	내 흥 동 918-5	322.5	
			-6	내 흥 동 918-4	320.7	
			-7	내 흥 동 918-3	312.4	
			-8	내 흥 동 918-2	285.7	
E	21	2,781.8	-1	내 흥 동 919-1	274.2	
			-2	내 흥 동 919-10	280.7	
			-3	내 흥 동 919-9	280.7	
			-4	내 흥 동 919-8	280.6	
			-5	내 흥 동 919-7	274.1	
			-6	내 흥 동 919-6	274.6	
			-7	내 흥 동 919-5	280.8	
			-8	내 흥 동 919-4	280.9	
			-9	내 흥 동 919-3	280.9	
			-10	내 흥 동 919-2	274.3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E	22	2,729.2	-1	내 흥 동 920-1	252.5	분 할 불허, 연 접 한 2획 지 내 합 병 허 용
			-2	내 흥 동 920-10	264.4	
			-3	내 흥 동 920-9	269.8	
			-4	내 흥 동 920-8	275.0	
			-5	내 흥 동 920-7	273.9	
			-6	내 흥 동 920-6	275.2	
			-7	내 흥 동 920-5	281.4	
			-8	내 흥 동 920-4	281.3	
			-9	내 흥 동 920-3	281.0	
			-10	내 흥 동 920-2	274.7	
E	23	2,782.4	-1	내 흥 동 921-1	275.5	
			-2	내 흥 동 921-10	280.9	
			-3	내 흥 동 921-9	280.7	
			-4	내 흥 동 921-8	280.9	
			-5	내 흥 동 921-7	274.1	
			-6	내 흥 동 921-6	273.9	
			-7	내 흥 동 921-5	280.7	
			-8	내 흥 동 921-4	280.5	
			-9	내 흥 동 921-3	280.5	
			-10	내 흥 동 921-2	274.7	
E	24	1,424.1	-1	내 흥 동 922-1	286.7	
			-2	내 흥 동 922-2	285.9	
			-3	내 흥 동 922-3	286.1	
			-4	내 흥 동 922-4	286.2	
			-5	내 흥 동 922-5	279.2	
E	25	3,160.4	-1	내 흥 동 1053-1	259.2	
			-2	내 흥 동 1053-12	265.4	
			-3	내 흥 동 1053-11	265.5	
			-4	내 흥 동 1053-10	265.6	
			-5	내 흥 동 1053-9	265.6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6	내 흥 동 1053-8	259.4	
			-7	내 흥 동 1053-7	259.3	
			-8	내 흥 동 1053-6	265.2	
			-9	내 흥 동 1053-5	265.2	
			-10	내 흥 동 1053-4	265.3	
			-11	내 흥 동 1053-3	265.4	
			-12	내 흥 동 1053-2	259.3	
E	26	3,164.3	-1	내 흥 동 1054-1	259.3	
			-2	내 흥 동 1054-12	265.6	
			-3	내 흥 동 1054-11	265.6	
			-4	내 흥 동 1054-10	265.6	
			-5	내 흥 동 1054-9	265.7	
			-6	내 흥 동 1054-8	259.8	
			-7	내 흥 동 1054-7	259.8	
			-8	내 흥 동 1054-6	265.9	
			-9	내 흥 동 1054-5	265.9	
			-10	내 흥 동 1054-4	265.8	
			-11	내 흥 동 1054-3	265.7	
			-12	내 흥 동 1054-2	259.6	
E	27	3,159.5	-1	내 흥 동 1056-1	258.9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 흥 동 1056-12	265.1	
			-3	내 흥 동 1056-11	265.4	
			-4	내 흥 동 1056-10	265.6	
			-5	내 흥 동 1056-9	265.6	
			-6	내 흥 동 1056-8	259.5	
			-7	내 흥 동 1056-7	258.8	
			-8	내 흥 동 1056-6	265.2	
			-9	내 흥 동 1056-5	265.2	
			-10	내 흥 동 1056-4	265.4	
			-11	내 흥 동 1056-3	265.6	
			-12	내 흥 동 1056-2	259.2	
E	28	3,159.1	-1	내 흥 동 1055-1	259.0	
			-2	내 흥 동 1055-12	265.2	
			-3	내 흥 동 1055-11	265.2	
			-4	내 흥 동 1055-10	265.3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5	내 흥 동 1055-9	265.5	
			-6	내 흥 동 1055-8	259.3	
			-7	내 흥 동 1055-7	258.9	
			-8	내 흥 동 1055-6	265.2	
			-9	내 흥 동 1055-5	265.4	
			-10	내 흥 동 1055-4	265.4	
			-11	내 흥 동 1055-3	265.5	
			-12	내 흥 동 1055-2	259.2	
E	29	1,250.3	-1	내 흥 동 1069-1	293.6	
			-2	내 흥 동 1069-4	283.0	
			-3	내 흥 동 1069-3	283.0	
			-4	내 흥 동 1069-2	390.7	
E	30	1,204.2	-1	내 흥 동 1071-1	276.9	
			-2	내 흥 동 1071-4	276.0	
			-3	내 흥 동 1071-3	276.0	
			-4	내 흥 동 1071-2	375.3	
E	31	1,119.8	-1	내 흥 동 1072-1	282.9	분할 불허, 연접한 2획 지내 합병 허용
			-2	내 흥 동 1072-4	277.0	
			-3	내 흥 동 1072-3	277.0	
			-4	내 흥 동 1072-2	282.9	
E	32	1,686.4	-1	내 흥 동 1074-1	283.0	
			-2	내 흥 동 1074-6	283.0	
			-3	내 흥 동 1074-5	277.2	
			-4	내 흥 동 1074-4	277.2	
			-5	내 흥 동 1074-3	283.0	
			-6	내 흥 동 1074-2	283.0	
E	33	1,678.3	-1	내 흥 동 1075-1	250.4	
			-2	내 흥 동 1075-6	271.0	
			-3	내 흥 동 1075-5	271.0	
			-4	내 흥 동 1075-4	271.0	
			-5	내 흥 동 1075-3	271.0	
			-6	내 흥 동 1075-2	343.9	
E	34	1,686.0	-1	내 흥 동 1076-1	283.0	
			-2	내 흥 동 1076-6	283.0	
			-3	내 흥 동 1076-5	277.0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번호	위 치	면적(㎡)	
			-4	내 흥 동 1076-4	277.0	
			-5	내 흥 동 1076-3	283.0	
			-6	내 흥 동 1076-2	283.0	
E	35	2,179.3	-1	내 흥 동 1077-1	245.3	
			-2	내 흥 동 1077-8	269.9	
			-3	내 흥 동 1077-7	269.9	
			-4	내 흥 동 1077-6	269.9	
			-5	내 흥 동 1077-5	269.9	
			-6	내 흥 동 1077-4	269.9	
			-7	내 흥 동 1077-3	269.9	
			-8	내 흥 동 1077-2	314.6	
E	36	1,685.8	-1	내 흥 동 1078-1	283.0	
			-2	내 흥 동 1078-6	283.0	
			-3	내 흥 동 1078-5	276.9	
			-4	내 흥 동 1078-4	276.9	
			-5	내 흥 동 1078-3	283.0	
			-6	내 흥 동 1078-2	283.0	
E	37	1,373.9	-1	내 흥 동 1082-1	276.0	
			-2	내 흥 동 1082-2	276.0	
			-3	내 흥 동 1082-3	276.0	
			-4	내 흥 동 1082-4	276.0	
			-5	내 흥 동 1082-5	269.9	

2)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45,769.8	감)60.0	345,709.8	-	345,769.8	감)60.0	345,709.8	분할·합병 불허 단, 공동 주택지 내 부대복리 시설 (근린생활 시설)은 획지분할 가능
A	1	31,683.0	-	31,683.0	내홍동 1018	31,683.0	-	31,683.0	
	2	29,646.7	-	29,646.7	내홍동 927	29,646.7	-	29,646.7	
	3	38,956.6	-	38,956.6	내홍동 1017	38,956.6	-	38,956.6	
B	1	55,290.0	-	55,290.0	내홍동 1065	55,290.0	-	55,290.0	
	2	53,578.3		53,578.3	내홍동 926	53,578.3		53,578.3	
	3	61,429.5	-	61,429.5	내홍동 925	61,429.5	-	61,429.5	
D	1	35,038.6	감)60.0	34,978.6	내홍동 1019	35,038.6	감)60.0	34,978.6	
	2	40,147.1	-	40,147.1	내홍동 924	40,147.1	-	40,147.1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23,636.9	-	-	23,636.9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 내 합병 허용
F	1	2,178.9	-1	내홍동 993-1	432.5	
			-2	내홍동 993-2	432.5	
			-3	내홍동 993-3	432.4	
			-4	내홍동 993-4	432.4	
			-5	내홍동 993-5	449.1	
F	2	744.4	-1	내홍동 994	744.4	
F	3	1,319.1	-1	내홍동 999-2	439.3	
			-2	내홍동 999-3	439.6	
			-3	내홍동 999-4	440.2	
F	4	1,924.1	-1	내홍동 1000-1	484.3	
			-2	내홍동 1000-2	484.2	
			-3	내홍동 1000-3	484.2	
			-4	내홍동 1000-4	471.4	
F	5	1,875.8	-1	내홍동 1001-1	463.4	
			-2	내홍동 1001-2	475.7	
			-3	내홍동 1001-3	475.9	
			-4	내홍동 1001-4	460.8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F	6	2,886.0	-1	내 흥 동 1002-1	470.3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 내 합병 허용
			-2	내 흥 동 1002-2	485.8	
			-3	내 흥 동 1002-3	486.1	
			-4	내 흥 동 1002-4	486.1	
			-5	내 흥 동 1002-5	486.3	
			-6	내 흥 동 1002-6	471.4	
F	7	1,933.3	-1	내 흥 동 917- 1	633.7	
			-2	내 흥 동 917- 2	652.4	
			-3	내 흥 동 917- 3	647.2	
F	8	1,605.9	-1	내 흥 동 917- 6	524.5	
			-2	내 흥 동 917- 5	543.3	
			-3	내 흥 동 917- 4	538.1	
F	9	2,624.5	-1	내 흥 동 1052-1	517.9	
			-2	내 흥 동 1052-2	530.2	
			-3	내 흥 동 1052-3	530.5	
			-4	내 흥 동 1052-4	530.2	
			-5	내 흥 동 1052-5	515.7	
F	10	2,098.4	-1	내 흥 동 1058-1	530.1	
			-2	내 흥 동 1058-2	530.3	
			-3	내 흥 동 1058-3	530.1	
			-4	내 흥 동 1058-4	507.9	
F	11	2,177.8	-1	내 흥 동 1080-1	436.8	
			-2	내 흥 동 1080-2	430.0	
			-3	내 흥 동 1080-3	430.0	
			-4	내 흥 동 1080-4	430.0	
			-5	내 흥 동 1080-5	451.0	
F	12	2,268.7	-1	내 흥 동 1081-1	442.0	
			-2	내 흥 동 1081-2	457.0	
			-3	내 흥 동 1081-3	457.0	
			-4	내 흥 동 1081-4	457.0	
			-5	내 흥 동 1081-5	455.7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83,239.5	-	-	83,239.5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내 합병 허용
G	1	4,468.1	-1	내홍동 1023-1	1,218.5	
			-2	내홍동 1023-2	1,085.4	
			-3	내홍동 1023-3	1,084.3	
			-4	내홍동 1023-4	1,079.9	
G	2	3,341.2	-1	내홍동 1026-1	836.4	
			-2	내홍동 1026-2	835.0	
			-3	내홍동 1026-3	834.8	
			-4	내홍동 1026-4	835.0	
G	3	4,363.3	-1	내홍동 1025-1	1,015.1	
			-2	내홍동 1025-2	1,264.3	
			-3	내홍동 1025-3	2,083.9	
G	4	2,651.1	-1	내홍동 1028-1	908.5	
			-2	내홍동 1028-2	879.6	
			-3	내홍동 1028-3	863.0	
G	5	3,397.1	-1	내홍동 909- 1	1,185.3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내 합병 허용
			-2	내홍동 909- 2	1,107.0	
			-3	내홍동 909- 3	1,104.8	
G	6	1,465.4	-1	내홍동 910	1,465.4	
G	7	4,862.2	-1	내홍동 909- 4	1,243.3	
			-2	내홍동 909- 5	1,232.8	
			-3	내홍동 909- 6	2,386.1	
G	8	2,181.2	-1	내홍동 911- 1	951.5	
			-2	내홍동 911- 3	629.4	
			-3	내홍동 911- 2	600.3	
G	9	1,517.0	-1	내홍동 912- 2	766.8	
			-2	내홍동 912- 3	750.2	
G	10	3,600.9	-1	내홍동 913- 1	947.6	
			-2	내홍동 913- 2	917.9	
			-3	내홍동 913- 3	888.0	
			-4	내홍동 913- 4	847.4	
G	11	3,627.6	-1	내홍동 1029-1	954.9	
			-2	내홍동 1029-2	857.8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G	12	2,829.4	-3	내 흥 동 1029-3	892.4	
			-4	내 흥 동 1029-4	922.5	
			-1	내 흥 동 1030-1	948.8	
			-2	내 흥 동 1030-2	948.2	
G	13	2,145.9	-3	내 흥 동 1030-3	932.4	
			-1	내 흥 동 1032-1	1,081.1	
G	14	2,495.3	-2	내 흥 동 1032-2	1,064.8	
			-1	내 흥 동 1036-1	1,200.6	
			-2	내 흥 동 1036-3	654.8	
G	15	3,986.6	-3	내 흥 동 1036-2	639.9	
			-1	내 흥 동 1031-1	954.8	
			-2	내 흥 동 1031-2	979.3	
			-3	내 흥 동 1031-3	1,030.3	
G	16	2,116.9	-4	내 흥 동 1031-4	1,022.2	
			-1	내 흥 동 1033-1	1,063.9	
G	17	2,495.2	-2	내 흥 동 1033-2	1,053.0	
			-1	내 흥 동 1038-1	1,201.0	
			-2	내 흥 동 1038-3	638.7	
G	18	3,622.2	-3	내 흥 동 1038-2	655.5	
			-1	내 흥 동 1039-1	982.3	
			-2	내 흥 동 1039-2	880.1	
			-3	내 흥 동 1039-3	879.9	
G	19	2,706.0	-4	내 흥 동 1039-4	879.9	
			-1	내 흥 동 1040-1	903.6	
			-2	내 흥 동 1040-2	903.7	
G	20	4,060.6	-3	내 흥 동 1040-3	898.7	분할 불허, 연접한 2획지내 합병 허용
			-1	내 흥 동 1041-1	1,033.2	
			-2	내 흥 동 1041-2	1,062.5	
			-3	내 흥 동 1041-3	1,000.0	
G	21	3,976.0	-4	내 흥 동 1041-4	964.9	
			-1	내 흥 동 1042-1	943.1	
			-2	내 흥 동 1042-2	976.6	
			-3	내 흥 동 1042-3	1,038.9	
			-4	내 흥 동 1042-4	1,017.4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G	22	4,755.9	-1	내홍동 1048-1	1,128.4	
			-2	내홍동 1048-2	1,177.1	
			-3	내홍동 1048-3	1,209.4	
			-4	내홍동 1048-4	1,241.0	
G	23	3,986.6	-1	내홍동 1046-1	1,027.9	
			-2	내홍동 1046-2	1,030.1	
			-3	내홍동 1046-3	977.0	
			-4	내홍동 1046-4	951.6	
G	24	3,435.6	-1	내홍동 1045-1	863.6	
			-2	내홍동 1045-4	854.3	
			-3	내홍동 1045-3	854.6	
			-4	내홍동 1045-2	863.1	
G	25	5,152.2	-1	내홍동 1050-1	1,685.0	
			-2	내홍동 1050-2	1,740.5	
			-3	내홍동 1050-3	1,726.7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9,921.2	-	9,921.2	
H	1	3,021.5	내홍동 1016-2	3,021.5	
	2	1,103.9	내홍동 1015-2	1,103.9	
	3	3,794.8	내홍동 1016-1	3,794.8	
	4	2,001.0	내홍동 1015-1	2,001.0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번호	위치	면적(㎡)	
합계		6,211.7	-	-	6,211.7	분할 불허, 연접합 획지 내 합병 허용
I	1	3,055.3	-1	내홍동 1043-1	997.5	
			-2	내홍동 1043-2	1,041.6	
			-3	내홍동 1043-3	1,016.2	
	2	3,156.4	-1	내홍동 1047-1	1,050.1	
			-2	내홍동 1047-2	1,065.5	
			-3	내홍동 1047-3	1,040.8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5,000.8	-	5,000.8	
J	2	5,000.8	내홍동 1059	5,000.8	

8) 학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37,573.8	-	37,573.8	
K	1	9,401.0	내홍동 998	9,401.0	초등학교
	2	15,001.6	내홍동 1063	15,001.6	
	3	13,171.2	내홍동 1060	13,171.2	중학교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2,058.0	-	2,058.0	
L	1	1,041.0	내홍동 982	1,041.0	
	2	1,017.0	내홍동 1068	1,017.0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699.5	-	699.5	
O	1	699.5	내홍동 923	699.5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번호	면적(㎡)	위치	면적(㎡)	
합계		13,023.5	-	13,023.5	노외 주차장
P	1	1,031.6	내홍동 1007	1,031.6	
	2	1,358.5	내홍동 1027	1,358.5	
	3	1,794.7	내홍동 912-1	1,794.7	
	4	1,927.5	내홍동 1034	1,927.5	
	5	1,930.0	내홍동 1035	1,930.0	
	6	3,430.8	내홍동 1044	3,430.8	
	7	515.4	내홍동 1057	515.4	
	8	550.3	내홍동 1070	550.3	
	9	484.7	내홍동 989	484.7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적(㎡)	위 치	면적(㎡)	
합 계		908.1	-	908.1	
Q	1	908.1	내 흥 동 978	908.1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점포겸용주택(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6 ~ E9, E14 ~ E16, E25 ~ E28	E6 ~ E9, E14 ~ E16, E25 ~ E28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점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및 1층에 한하며, 건축물 연면적의 60%이상이 주거용도일 경우 허용 - 지하층의 허용층수는 지하 1층에 한하며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80%이하
		높 이	·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필로티구조를 포함함】
		배 치	-
		가 구 수	· 1획지당 5가구 이하(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3가구 이하)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2m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 이상),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20%이내 허용
		색 채	· 지붕색 : 2GY-10BG를 사용하고 명도 7~9, 채도 3이하 권장 · 주조색 : 2YR-10YR로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 보조색 : 10YR-8Y로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6 권장 · 강조색 : 2YR-10GY로 사용하고 명도 4~6, 채도 6~10 권장
		건축선	-

○ 일반주택(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 E5, E10 ~ E13, E17 ~ E24, E29 ~ E37	E1 ~ E5, E10 ~ E13, E17 ~ E24, E29 ~ E37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지하층의 허용층수는 지하 1층에 한하며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 이	·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필로티구조를 포함함】
		배 치	-
		가구수	· 1획지당 5가구 이하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2m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 이상),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20%이내 허용
		색 채	· 지붕색 : 2GY-10.0BG를 사용하고 명도 7~9, 채도 3이하 권장 · 구조색 : 2YR-10YR로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 보조색 : 10YR-8Y로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6 권장 · 강조색 : 2YR-10GY로 사용하고 명도 4~6, 채도 6~10 권장
		건축선	-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변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BL~ A3BL, B1BL~ 3BL, D1BL~ D2BL	A1BL~ A3BL, B1BL~ 3BL, D1BL~ D2BL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 25%이하
		용 적율	· A2BL A3BL : 160%이하 · A1BL, B1BL, B2BL, B3BL : 180%이하 · D1BL, D2BL : 200%이하
		높 이	· 20층 이하(단, 조정면적 의무비율(40~50%)초과 시 25층 이하)
		배 치	·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법, 건축조례 등 관련법규 준수
		형 태	· 아파트의 길이 : 80m 이하 · 아파트의 지붕 : 경사지붕이 원칙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거나 조형적인 옥탑디자인, 옥상조경을 한 경우는 예외.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 설치 불허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m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색 채	· 지붕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고, 높은 계층의 원색은 지양 · 주조색 : 5YR-5PB, 명도 8이상, 채도 3이하 · 보조색 : 5YR-5PB, 명도 5~8, 채도 2~8 · 강조색 : 주조색과 보조색유형에 관계없이 선택가능, 명도 3~6, 채도 2~8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12m(도면 참고) · 직각배치구간 - 16~25m(건축한계선 포함, 도면 참고) · 단,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대해서만 적용(지하부는 미적용)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1~12	F1~1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 · 불허용도 - 주거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2층 이상,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 · 대문 설치 불허 ·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색 채	·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4~10 권장 · 구조색 :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9이상, 채도 2이하 권장 · 보조색 : 8YR-8Y, 5PB-10PB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 · 강조색 : 2YR-10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2m(도면 참고)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1~G10	G1~G10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G1, G2, G3, G4, G5, G6, G7-1, G7-2, G8, G9에서만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따른 숙박시설(G7-3, G10)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560%이하
		높이	· 2층 이상, 7층 이하
		배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불허 · 대문 설치 불허 ·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색 채	·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 · 구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 ·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11~G20	G11~G20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G11, G12, G13, G14, G16, G17에서만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G15, G18, G19, G20)
		건폐율	· 80%이하
		용 적 륜	· 1,000%이하
		높 이	· 2층 이상, 1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불허 · 대문 설치 불허 ·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색 채	·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 · 주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 ·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21, G23, G24	G21, G23, G24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G24에서만 허용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G21, G23)
		건 폐 율	· 80%이하
		용 적 륜	· 800%이하
		높 이 변 경	· 2층 이상,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 설치 불허 · 대문 설치 불허 ·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색 채	·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 · 주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 ·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G22, G25	G22, G25	용 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및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단, 불허용도는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건폐율	· 80%이하
		용적율	· 480%이하
		높 이	· 2층 이상, 6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 설치 불허 · 대문 설치 불허 · 인접대지와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색 채	·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 4~10 권장 · 구조색 : N8이상,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 보조색 : 8YR-8Y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 · 강조색 : 2YR-8YR, 10Y-5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H1 ~ H4	H1 ~ H4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과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400%이하
		높 이	· 6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도면 참고)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I2	I1, I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과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목의 요양병원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800% 이하
		높 이	· 2층 이상, 10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서터 처리 ·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 등화 설치 불허 · 대문 설치 불허 · 인접대지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J2	J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에 따른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 60% 이하
		용 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8) 학교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K1~K3	K1~K3	용 도	· 허용용도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 60%이하
		용 적률	· 18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학교시설의 교사 등은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계획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 건축한계선은 수업을 위한 교사(체육관 등은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교육환경에 적합하도록 소음기준치 55dB이하가 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하여기준치 이하로 낮출 경우에 한하여 직각배치 및 도로변 건축한계선 제외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L1, L2	L1, L2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및 그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 (도면 참고)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O1	O1	용 도	· 허용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에 따른하수도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1m(지하부 미적용)(도면 참고)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P1~P9	P1~P9	용 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P2~P6 : 560%이하 · P1, P7~ P9 : 320%이하
		높 이	· P2~P6 : 7층 이하 · P1, P7~P9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1~1.5m(도면 참고)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Q1	Q1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에 따른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 판매소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색 채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3m(도면 참고)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량의 진출입	공통	·차량 진·출입은 그 필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 계상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상의 차량진출입 관련사항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준수 ·공동주택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주차장 설치	공통	·주차시설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사항 중 강화된 규정 적용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1) 교통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스쿨존 지정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통학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및 조성
- 기타 지구내 교통안전에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결과에
따른 교통계획을 준수토록 함

(2)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 주간선 및 보조간선, 집산도로에서는 출입을 불허하고 국지도로 및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서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도면을 참조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보도연계형공지

- 대지안에서 보도와의 경계에 접한 부분에 보행 등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 폭
의 공개공지 조성
-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과 썸지공간, 녹지 등을 조성하되, 보행자의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보도 연계형 공지는 인접한 보도와 바닥 높이를 같도록 조성하고, 경계석, 바닥포장 등
을 통해 구분
- 포장패턴은 인접한 보도와 비슷한 질감과 색상을 갖고 있는 재료로서 점토벽돌 등
투수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
- 보도 연계형 공지 조성은 건축물의 신축시 건축주가 시행

(2) 공공공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에서 공공공지의 설치위치가 표시된 필지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일반사항

- 군산시 고시 제2009-75호의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 고시』 중 특정구역(수송택지지구)의 기준에 따름

4) 경관계획(변경없음)

(1) 기본방향

- 주변 단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풍부한 녹음이 있는 주거 환경조성
- 외부의 자연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계된 지구 내 녹지경관을 창출하고 다양한 표정이 있는 도심형 거리 풍경을 연출
- 생활가로를 따라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사는 문화를 창출

(2) 지구 경관계획

- 지구 외곽은 양호한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거동 개발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 지구내 주요 교차부에 위치한 상업동및 업무동은 입면 특성화 및 평면의 변화로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 개성 있는 가로경관을 창출
- 생활가로변과 근린공원 내에서 통경축이 유지되는 지구경관을 형성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지구내 전력·통신선로는 지중화 시설로 계획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재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정·재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름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 「군산 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동사업에 관련된 제영향평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따름

③ 해당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표시된 위치도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군산시 고시 제2022 - 10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6.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22-00002호 (2022. 6. 9.)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군산시장(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건설과))
- ③ 허가목적 : 교량(대장교) 확장 설치사업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158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1,013m²
- ⑥ 허가기간 : 2022. 7. 5. ~ 2052. 7. 4.까지(30년)

군산시 고시 제2022 - 1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7.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군산 구암동 272-3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신한자산신탁(주)
 - 나. 대 표 자 : 배일규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앤지타워 13층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5월 19일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2년 7월 5일
5. 사업내용(변경승인 내용 반영)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72-3 외 36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36,781m²
 - 라. 건축면적 : 7,058.7402m²(건폐율 : 19.19%)
 - 마. 연 면 적 : 134,497.9996m² (용적율 : 248.98%)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외, 800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800				
84A	민영주택	341	84.8292	25.8733	110.7025	
84B	민영주택	134	84.7570	25.8185	110.5755	
84C	민영주택	186	84.9882	26.5186	111.5068	
84D	민영주택	133	84.9932	25.9057	110.8989	
149	민영주택	2	149.5047	46.4790	195.9837	
153	민영주택	1	153.4785	47.2470	200.7255	
155	민영주택	3	155.9565	48.8293	204.7858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311,346,986천원

차.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년 7월 31일

6. 변경승인 내용

가. 사업주체 상호 : 아시아신탁(주) → 신한자산신탁(주)

나.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4.12.31. → 사업계획승인일 ~ 2025.7.31.

7.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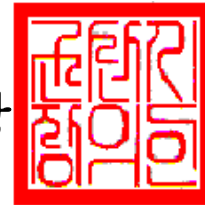
군산시 고시 제 2022 - 102호

어린이 보호구역 변경 지정 고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어린이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 7. 7.

군 산 시 장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2. 고시 내용

시 설 명	주 소	지정 목적	비 고
군산내흥초등학교	군산시 내흥동 388-1번지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3. 보호구역 지정 관련 문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 (☎063-454-3813)

4. 위치도 및 구간 : 붙임참조
[군산 내홍초등학교]



(변경전) 군산내홍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후) 군산내홍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군산시 고시 제2022 - 10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 2)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조촌동 635-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4호선 외2개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15.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조촌동 635-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나. 명 칭 : 구암동 317-4번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대로2-4호선 외 2개노선)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가. 대로 2-4 : B=2.8~3m, L=152.3m, A=453m²(폭원확장구간 개설)

나. 소로 3-871 : B=1.5~1.7m, L=129.8m, A=218m²(폭원확장구간 개설)

다. 중로 1-23 : 당초 - B=20m, L=313.5m, A=4,968m²(노선 신설)

변경 - B=20m, L=313.5m, A=5,576m²(노선 신설)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완주군 이서면 오공로 11-13(갈산리)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유)에스지산업개발 대표 유승욱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대로2-4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조촌동	635-5	도	145	12	북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435				
2		629-9	장	7	6	이철영	군산시 구암로 47(조촌동)				
3		629-2	장	2,378	196	이철영	군산시 구암로 47(조촌동)				
4		631-1	장	2,287	107	유한회사금강장례 예식장	군산시 구암동 317-4				
5		631-5	대	1,190	34	유한회사예영상사	군산시 조촌동 631-5				
6		631-9	창	420	35	신동숙	군산시 계산로90, 105동601호 (지곡동,지곡동엠코타운)				
7		631-8	창	929	16	유한회사제일자동차 부품상사	군산시 조촌동 631-8				
8		631-10	창	243	19	유한회사제일자동차 부품상사	군산시 조촌동 631-8				
9		631-4	구	10	3	고려제지주식회사	군산시 구암동 333				
10		632-3	구	677	25	페이퍼코리아주식 회사	군산시 조촌동 2				
계	10필지			8,286	453						

○ 소로3-871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구암동	318-2	도	1,280	5	재단법인미곡남창 로교한국선교회유 지재단	전라북도 광주군 관주읍 양림정 226				
2		318-3	구	169	1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		318-16	답	2	2	군산시					
4		318-7	도	23	5	군산시					
5		610-19	도	34	3	국(국토교통부)					
6		317-5	도	340	87	군산시					
7		606-8	구	22	3	국(국토교통부)					
8		706-7	장	2	2	유한회사금강장례 예식장	군산시 구암동 317-4				
9	조촌동	705-7	장	1	1	유한회사금강장례 예식장	군산시 구암동 317-4				
10		706-8	구	21	2	국(국토교통부)					
11		705-5	도	8	1	국(국토교통부)					
12		633-11	대	13	13	유한회사금강장례 예식장	군산시 구암동 317-4				
13		634-5	도	255	50	국(국토교통부)					
14		635-5	도	145	30	북선제지화학공업 주식회사	함경북도 길주군 길주읍 영기동 435				
계	14필지			2,315	218						

○ 중로1-23호선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1	군산시 구암동	318-2	도	1,280	44	165	재단법인미국남장 로교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전북 광주군 관주읍 양림정 226				
2		610-20	도	5,935	56	90	국(국토교통부)					
3		317-1	도	549	191	242	군산시					
4		317-3	구	592	146	323	한국농어촌공사					
5		317-2	답	86	32	77	군산시					
6		403-6	대	678	678	678	군산시					
7		262-7	구	1,921	419	599	한국농어촌공사					
8		403-16	대	969	969	969	군산시					
9		403-17	대	678	678	678	군산시					
10		407-8	구	182	182	182	국(농림수산부)					
11		262-6	구	494	227	227	군산시					
12		262-8	도	130	32	32	군산시					
13		262-4	도	1,065	365	365	군산시					
14		407-16	답	465	465	465	군산시					
15		405-4	구	264	40	40	국(농림수산부)					
16		403-14	전	216	216	216	군산시					
17		403-15	잡	131	131	131	군산시					
18		403-3	도	307	97	97	오금선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 44				
계	18필지			15,942	4,968	5,576						

군산시 고시 제2022 - 10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12.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2022-00006호 (2022. 7. 12.)
- ② 허가를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 :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동삼동))
- ③ 허가목적 : 해수유동관측소 설치 운영
- ④ 허가장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산141-1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5m²
- ⑥ 허가기간 : 2022. 7. 12. ~ 2037. 7. 11.까지

군산시 공고 제2022 -1489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 7. 11.

군 산 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기관명	내국인			영주체류자격 취득일후 3년경과 외국인수(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A+B)	비고
	19세이상 인구수	선거권이 없는자	선거권 보유자(A)			
군산시	222,353	248	222,105	375	222,480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군산시장】

(단위 : 명)

읍면동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외국인수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자)	주민소환투 표청구권자 총수	청구 서명인수	1/30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 최소 서명인구수
계	222,353	375	222,480	33,372	
옥구읍	2,926	1	2,925		439
옥산면	3,795	2	3,791		569
회현면	2,869	3	2,871		431
임피면	2,476	0	2,473		371
서수면	2,335	2	2,335		351
대야면	4,545	1	4,543		682
개정면	2,746	2	2,744		412
성산면	2,658	3	2,655		399
나포면	2,049	1	2,045		307
옥도면	3,065	4	3,063		460
옥서면	2,699	0	2,697		405
해신동	2,037	8	2,043		307
월명동	4,692	22	4,699		705
삼학동	5,047	16	5,055		759
신평동	6,162	7	6,164		925
중앙동	3,944	13	3,949		593
흥남동	10,617	16	10,616		1,593
조촌동	19,178	25	19,185		2,225
경암동	6,574	9	6,578		987
구암동	7,034	11	7,036		1,056
개정동	2,439	4	2,441		367
수송동	41,706	48	41,722		2,225
나운1동	10,834	17	10,839		1,626
나운2동	19,188	20	19,197		2,225
나운3동	25,895	35	25,897		2,225
소룡동	14,726	84	14,795		2,220
미성동	10,117	21	10,122		1,519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군산시의회의원】

(단위 : 명)

읍 면 동		19세 이상 주민 수	19세 이상 외국인수 (영주체류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자)	청구권자 총 수	청 구 서명인 수	1/30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서명 인구수
가 선거구	소계	15,354	10	15,347	3,070	
	옥구읍	2,926	1	2,925		154
	옥산면	3,795	2	3,791		154
	회현면	2,869	3	2,871		154
	옥도면	3,065	4	3,063		154
	옥서면	2,699	0	2,697		154
나 선거구	소계	38,089	136	38,179	7,636	
	해신동	2,037	16	2,043		382
	소룡동	14,726	8	14,795		382
	신평동	6,162	84	6,164		382
	삼학동	5,047	21	5,055		382
	신평동	10,117	7	10,122		382
다 선거구	소계	16,809	9	16,795	3,359	
	임피면	2,476	0	2,473		168
	서수면	2,335	2	2,335		168
	대야면	4,545	1	4,543		168
	개정면	2,746	2	2,744		168
	성산면	2,658	3	2,655		168
라 선거구	소계	39,169	62	39,189	7,838	
	중앙동	3,944	13	3,949		392
	조촌동	19,178	25	19,185		392
	경암동	6,574	9	6,578		392
	구암동	7,034	11	7,036		392
	개정동	2,439	4	2,441		392
마 선거구	소계	15,309	38	15,315	3,063	
	월명동	4,692	22	4,699		154
	흥남동	10,617	16	10,616		154
바 선거구	소계	41,706	48	41,722	8,345	
	수송동	41,706	48	41,722		418
사 선거구	소계	30,022	37	30,036	6,008	
	나운1동	10,834	17	10,839		301
	나운2동	19,188	20	19,197		301
아 선거구	소계	25,895	35	25,897	5,180	
	나운3동	25,895	35	25,897		259

군산시 공고 제2022 - 1503호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고

『회현리도 210호 도로확포장공사(회현초~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2.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2. 공사명 및 사업구간

사업명	사업구간	규 모	사업기간
회현리도 210호 도로확포장공사(회현초 ~주차장)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738-4 ~ 회현면 세장리 오곡리 451-1	농어촌도로 확포장 L=0.67km, B=6.5m,	2022 ~ 2023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토지조서 참조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7. 12. ~ 2022. 7. 26.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군산시 건설과(☎ 063-454-3582)

※ 토지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시기 : 2019년 11월부터 협의 보상중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 시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7.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합 계(94필지)					32,547	8,653						
1	회현	대정	738-4	도	11,552	62	국(건설부)					
2	회현	대정	289-2	도	7	7	전윤국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3	회현	대정	289-5	도	26	26	전윤국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4	회현	대정	290-6	도	10	10	강옥선	옥구군 회현면 대정리 240				
5	회현	대정	292-4	답	34	34	강희중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81				
6	회현	대정	290-2	도	31	31	강옥선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40				
7	회현	대정	290-10	대	86	86	군산시					
8	회현	대정	290-9	답	46	46	군산시					
9	회현	대정	290-5	도	26	26	강옥선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40				
10	회현	대정	290-7	대	4	4	군산시					
11	회현	대정	290-8	도	259	48	전라북도					
12	회현	대정	294-5	답	24	24	군산시					
13	회현	대정	294-2	도	271	271	군산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4	회현	대정	295-4	답	54	54	군산시					
15	회현	대정	295-2	도	264	264	전윤국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16	회현	대정	296-3	답	23	23	군산시					
17	회현	대정	296-1	도	63	63	국(농수산부)					
18	회현	대정	297-3	답	17	17	군산시					
19	회현	대정	279-4	대	2	2	군산시					
20	회현	대정	278-6	전	1	1	군산시					
21	회현	대정	278-3	도	264	264	군산시					
22	회현	대정	245-4	도	22	22	군산시					
23	회현	대정	278-2	도	43	43	군산시					
24	회현	대정	245-2	도	13	13	군산시					
25	회현	대정	242-4	도	210	210	군산시					
26	회현	대정	242-5	전	18	18	강도복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40				
27	회현	대정	242-1	도	93	93	국(기획재정부)					
28	회현	세장	569-1	도	14	14	강동순	군산시 죽동1길 25-1				
29	회현	세장	609-2	도	11,533	273	국(농수산부)					
30	회현	세장	571-5	도	32	32	국(기획재정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31	회현	세장	571-6	도	42	42	강도수	미등기(회현면 대정리 282)				
32	회현	세장	571-7	전	138	138	군산시					
33	회현	세장	567-8	전	79	79	군산시					
34	회현	세장	567-3	도	73	73	군산시					
35	회현	세장	566-10	답	57	57	군산시					
36	회현	세장	567-7	전	48	48	군산시					
37	회현	세장	566-12	전	43	43	군산시					
38	회현	세장	566-11	전	33	33	군산시					
39	회현	세장	560-4	전	47	47	군산시					
40	회현	세장	560-2	도	69	69	군산시					
41	회현	세장	559-3	도	136	136	강인규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537				
42	회현	세장	559-5	전	50	50	군산시					
43	회현	세장	558-3	도	192	192	김관정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472				
44	회현	세장	558-6	전	13	13	군산시					
45	회현	세장	558-7	전	13	13	군산시					
46	회현	세장	558-2	도	377	377	김봉준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471				
47	회현	세장	562-2	답	191	191	군산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48	회현	세장	563-4	답	109	109	군산시					
49	회현	세장	563-2	도	149	149	군산시					
50	회현	세장	563-1	도	33	33	군산시					
51	회현	세장	553-3	답	38	38	군산시					
52	회현	세장	553-1	도	46	46	국(건설부)					
53	회현	세장	451-4	답	226	226	군산시					
54	회현	세장	451-2	도	200	200	국(건설부)					
55	회현	대정	130-1	도	369	2	전라북도					
56	회현	대정	137-2	도	23	23	전라북도					
57	회현	대정	289-4	전	17	17	전윤국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58	회현	대정	289-3	도	264	264	전윤국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59	회현	대정	290-3	도	198	198	강옥선	옥구군 회현면 대정리 240				
60	회현	대정	292-2	도	473	473	군산시					
61	회현	대정	293-2	도	152	152	전윤국	옥구군 회현면 원우리				
62	회현	대정	297-1	도	23	23	문웅천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39(미등기)				
63	회현	대정	279-2	도	175	175	군산시					
64	회현	대정	239-1	대	62	62	군산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65	회현	대정	278-5	전	18	18	군산시					
66	회현	대정	241-4	도	20	20	강옥선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40				
67	회현	대정	241-7	전	4	4	강옥선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40				
68	회현	대정	241-3	도	7	7	강옥선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40				
69	회현	대정	241-6	대	16	16	강옥선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40				
70	회현	대정	241-2	도	3	3	강옥선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40				
71	회현	세장	568-2	도	33	33	강기덕	군산시 구정2리(미등기)				
72	회현	세장	568-3	도	60	60	군산시					
73	회현	세장	568-4	전	120	120	군산시					
74	회현	세장	산208-2	도	198	198	강동순	군산시 죽동1길 25-1				
75	회현	세장	산207-1	임	13	13	강경자	군산시 구영4길 39 (영화동)				592/14060
							강금자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92-4				703/14060
							강금주	대전시 서구 갈마로117번길 16-10, 203호 (갈마동, 방주빌라)				304/14060
							강복식	군산시 소룡동 755 신도시아파트				304/1406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02동 1416호				
							강부순	익산시 선화로5길 45, 3동 702호 (모현동1가, 중앙하이츠아파트)				76/14060
							강성식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2 관악드 림타운 117동 2003호				456/14060
							강순옥	군산시 옥구읍 우포길 25				703/14060
							강연화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05 서오아 파트 102동 713호				304/14060
							강옥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79-1 현대빌 라 401호				304/14060
							강진숙	안성시 석정동 343 한빛마을우남퍼 스트빌 103동 404호				592/14060
							강혜숙	대전시 중구 태평동 253-1 유등마 을아파트 112동 402호				304/14060
							강혜자	군산시 구영4길 39 (영화동)				148/14060
							강효식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54 진로아 파트 710동 501호				592/14060
							고금례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50-6, 102동 713호 (서오아파트)				456/1406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김영희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812 삼성래 미안트리베라아파트 213동 1802호				703/14060
							군산시					7519/14060
76	회현	세장	산203-2	도	33	33	국(기획재정부)					
77	회현	세장	566-13	전	24	24	군산시					
78	회현	세장	567-4	도	102	102	군산시					
79	회현	세장	567-2	도	307	307	국(기획재정부)					
80	회현	세장	산202-2	도	298	298	군산시					
81	회현	세장	산200-2	도	298	298	강홍인	미등기				
82	회현	세장	560-1	도	109	109	군산시					
83	회현	세장	559-2	도	185	185	강인규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537				
84	회현	세장	558-6	전	25	25	군산시					
85	회현	세장	558-4	도	76	76	군산시					
86	회현	세장	557-3	도	40	40	오상래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404(미등기)				
87	회현	세장	557-2	도	36	36	오상래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404(미등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개정 2016. 6. 14.>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면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88	회현	세장	555-3	도	179	179	장흥오씨길주목사신 언파종중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382				
89	회현	세장	555-2	도	122	122	김종렬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237				
90	회현	세장	554-2	도	69	69	김종렬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237				
91	회현	세장	554-3	도	268	268	장흥오씨길주목사신 언파종중	군산시 회현면 세장리 382				
92	회현	세장	450-3	도	139	5	국(건설부)					
93	회현	세장	450-2	도	66	26	국(기획재정부)					
94	회현	세장	451-1	도	268	87	국(건설부)					

군산시 공고 제 2022-1505호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군산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지정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와 내용 및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 7. 13.

군 산 시 장



1. 목 적

군산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함에 있어 지정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2. 07. 13. ~ 2022. 08. 02.(20일)

5.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08.0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22. 07. 13. ~ 2022. 08. 02.(20일)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3-454-3769)

다. 접 수 처 : 전라북도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3813

라. 보내실 곳 : (우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교통행정과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6.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위치도



위치 : 임피면 영창리 833-3번지 일원(L=250m)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예 고 내 용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영창경로당)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군산시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군산시 공고 제2022-151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9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지번정정)

군산시 고시 제2020-103호(2020.6.26.)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지곡동 32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9호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5.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24-4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대로2-9호선 도로확장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
 - 당초 : 대로2-9 L=470m, B=30m, A=16,337㎡
 - 변경 : 대로2-9 L=470m, B=30m, A=17,13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청(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0. 6. 26. ~ 2025. 12.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당초)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나운동	177-1	도	1,245	323	군산시					
2	〃	산217	도	99	5	군산시					
3	〃	산216-4	임	74	3	국(기획재정부)					
4	〃	산216-5	임	1,022	1,003	국(기획재정부)					
5	〃	184-2	전	636	63	한국농어촌공사					
6	〃	184-6	전	356	356	군산시					
7	〃	산223-5	임	463	25	유*자	부산시 남구 민락 동 30-1, 107호				
8	〃	산223-6	임	1,262	1,011	군산시					
9	〃	산227-5	묘	1,126	315	군산시					
10	〃	산224-4	임	3,743	3,443	군산시					
11	〃	191-46	임	703	175	군산시					
12	〃	192-1	전	393	27	군산시					
13	〃	192-2	전	460	66	군산시					
14	〃	192-3	전	60	45	군산시					
15	〃	191-35	묘	159	4	군산시					
16	〃	1495	도	572	418	국(농수산부)					
17	〃	191-12	전	1,788	382	군산시					
18	〃	191-16	전	526	13	군산시					
19	〃	191-14	전	296	168	군산시					
20	〃	191-42	전	259	134	군산시					
21	〃	191-41	전	394	394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2	〃	산216-3	도	1,568	896	국(기획재정부)					
23	〃	산216-2	도	298	236	국(기획재정부)					
24	〃	174-25	임	201	76	국(기획재정부)					
25	〃	산223-7	임	418	290	유*자	부산시 남구 민락 동 30-1, 107호				
26	〃	1517-4	도	21	21	군산시					
27	〃	1517-5	도	267	267	군산시					
28	〃	1517-6	도	168	152	재단법인**교대 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농 업협 동조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용암 동)	근저당	
29	〃	1517-9	임	840	689	재단법인**교대 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30	군산시 지곡동	484	도	883	741	국(농수산부)					
31	〃	324-28	임	93	93	김*은	전북 군산시 중양 로33-3, 104동 702 호(대명동, 아이플 러스티)	주식 회사 **은 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2	〃	324-37	임	242	242	군산시					
33	〃	324-14	대	109	2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 면 상장곶윗길 119	주식 회사 **은 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4	〃	324-15	대	263	7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 면 상장곶윗길 119	주식 회사 **은 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5	〃	324-36	대	58	53	군산시					
36	〃	324-35	전	788	788	군산시					
37	〃	324-4	전	253	104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 면 상장곶윗길 119	주식 회사 **은 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8	〃	324-21	도	308	98	군산시					
39	〃	328-7	전	155	155	군산시					
40	〃	329-2	전	86	86	군산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나운동	177-2	도	274	274	군산시					
2	〃	산216-8	임	1	1	군산시					
3	〃	산216-9	임	886	886	군산시					정정
4	〃	184-7	전	97	97	군산시					정정
5	〃	184-6	전	356	356	군산시					
6	〃	산223-8	임	33	33	군산시					
7	〃	산223-9	임	1,187	1,187	군산시					
8	〃	산227-7	묘	634	634	군산시					정정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9	군산시 나운동	산 224-11	임	3,648	3,648	군산시					
10	〃	191-83	임	7	7	군산시					
11	〃	191-84	임	215	215	군산시					
12	〃	192-4	전	38	38	군산시					
13	〃	192-5	전	81	81	군산시					
14	〃	192-6	전	48	48	군산시					
15	〃	191-82	묘	12	12	군산시					
16	〃	1495	도	572	572	농수산부					
17	〃	191-80	전	396	396	군산시					
18	〃	191-81	전	84	84	군산시					
19	〃	191-42	전	259	259	군산시					
20	〃	191-41	전	394	394	군산시					
21	〃	산216-7	도	1,207	1,207	군산시					
22	〃	산216-2	도	298	298	군산시					
23	〃	174-25	임	201	201	군산시					
24	〃	1517-4	도	21	21	군산시					
25	〃	1517-5	도	267	267	군산시					정정
26	〃	1517-12	도	142	142	군산시					
27	〃	1517-13	임	674	674	전성태	옥구읍 옥구동로 80-1				
28	지곡동	329-2	전	86	86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29	ㄱ	328-7	전	155	155	군산시					
30	ㄱ	324-46	도	96	96	군산시					
31	ㄱ	324-42	전	79	79	군산시					정정
32	ㄱ	324-35	전	788	788	군산시					
33	ㄱ	324-47	대	49	49	군산시					
34	ㄱ	324-45	대	1	1	군산시					
35	ㄱ	324-44	대	4	4	군산시					정정
36	ㄱ	324-43	대	1	1	군산시					정정
37	ㄱ	324 -37	임	242	242	군산시					
38	ㄱ	324-41	임	110	110	군산시					정정
39	ㄱ	324-28	임	93	93	군산시					정정
40	ㄱ	328-13	전	1	1	채금주	내초동 18				추가
41	ㄱ	484-1	도로	269	269	농수산부					

군산시 공고 제2022-151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지번정정)

군산시 고시 제2018-59호(2018.5.11.)호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군산시 지곡동 139-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변경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5.

군 산 시 장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139-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선)사업
- 2) 명 칭 :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변경)

1) 당 초 : $L=706m$, $B=30m$, $A=19,388m^2$

2) 변 경 : $L=706m$, $B=30m$, $A=19,824m^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청(도시계획과)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 05. 11. ~ 2022.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당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예 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군산	지곡	64-4	구	859	17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2	“	“	137-9	구	302	92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3	“	“	63-1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4	“	“	327	답	2,992	5	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681, 103동 805호(평화동2가,미송평화하이존아파트)	이재규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22 군산시 수송동로 91, 105동 1102호(수송동, 수송아이파크)	임실농업협동조합 최명순	
5	“	“	128	답	1,157	416	군산시 하나운로 48, 203동401호 (나운동,롯데3차아파트)	고형구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업협동조합	
6	“	“	128-3	답	991	636	군산시 구영4길 38(영화동)	김중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하이트진로주식회사	지분 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전산로 222, 비동 1402호 (보정동,죽전신세계세텐)	김종선			지분 1/2
7	“	“	129	답	1,152	554	군산시 나운동 155-1 우신동영 아파트 101동 608호	장영록	군산시 옥구읍 옥구로 37	옥구농업협동조합	
8	“	“	129-1	답	2,466	528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6-1 한양운남 비동 102호	전기현			지분 31/100
							군산시 나운동92 금호타운아파트 201동 1204호	이두철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김점자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 1동 403호	임유정			지분 19/100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2길 6	정만임			지분 1/2
9	“	“	132-1	답	1,912	347	군산시 중앙로 76-13(중앙로3가)	정만숙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73(유천동)	서대전농업협동조합	지분 1/2
10	“	“	136-1	답	2,025	480	익산시 영등동 771-3 우미아파트 101동 901호	권기복			지분 1/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1동 403호	임유정			지분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43, 210동 302호(지족동,반석마을2단지)	강성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업협동조합	지분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서곡현대아파트 105동 601호	서은수			지분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 101동 402호(산천동,리버힐삼성아파트)	박희주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협동조합	지분 1/8

11	“	“	136-7	답	2,025	603	익산시 영등동 771-3 우미아파트 101동 901호	권기복			지분 1/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1동 403호	임유정			지분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43, 210동 302호(지족동,반석마을2단지)	강성진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농 업협동조 합	지분 2/8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73-2 서곡현대아파트 105동 601호	서은수			지분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7, 101동 402호(산천동, 리버힐삼성아파트)	박희주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예 협동조합	지분 1/8
12	“	“	128-2	답	992	120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2동 103호	손균홍			
13	“	“	129-2	답	842	702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6-1 한양운남 비동 102호	전기현			지분 31/100
							군산시 나운동92 금호타운아파트 201동 1204호	이두철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김점자			지분 25/10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637 남양황제아파트 1동 403호	임유정			지분 19/100
14	“	“	126-1	답	1,413	1,413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군산시 변영로 162	군산농업 협동조합	
소계(14필지)						2,83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예 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5	군산	지곡	64-1	답	4,122	1,435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9 (효자동3가)	최웅기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지분 1157/412 2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23-2 신일강변아파트 105동 606호	박준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지분 904/4122
							군산시 나운동 155-5 대우아파트 102동 702호	이두철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지분 904/4122
							군산시 지곡동 158-1 은파코아루아파트 102동 801호	김경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지분 1157/412 2
16	“	“	136-6	답	2,145	1,030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2576/171 60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98-19	문주	군산시 수송동 24-13	군산원 농업협 동조합	지분 1288/171 60
							군산시 수송동로 91, 106동 201호 (수송동,수송아이파크)	김진희			1288/171 60
							군산시 개정동 585-20	문성희			지분 2576/171 60
							익산시 모현동1가 762-13	신순자			지분 4296/171 60
							군산시 나운동 100-11 롯데3차아파트 201동 902호	최경락			지분 5136/171 60
17	“	“	137-16	답	2,221	757	군산시 부곡1길 5(나운동)	고종규	정읍시 고부면 영주로 557	황토현 농업협 동조합	지분 992/7131
							군산시 옥구읍 척동길 100	김영국			지분 114/7131
							군산시 의료원로32(지곡동)	김석분			지분 545/7131
							군산시 회현면 회미로 621	성용례			지분 95.5/7131
							군산시 수송동로 36 103동 502호(수송동, 한라비발디1단지아파트)	한명례			지분 95.5 /7131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513-4	장정선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1255-8 현대아파트 105동 1102호	양경희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155-10 동신아파트 106동 1501호	박미자			지분 661/7131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2)주공아파트 207동 1304호	이상언			지분 661/7131
							군산시 나운동 345 롯데아파트 102동 603호	김종기			지분 661/7131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아파트 11동 110호	유호석			지분 661/7131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7 현대아파트 104동 201호	유종성			지분 661/7131
							군산시 미룡동 900-1 미룡(3)주공아파트 315동 202호	이승진			지분 331/7131
							군산시 개정동 585-20	고치영			지분 331/7131

18	“	“	138-6	답	456	456		군산시			
19	“	“	139-6	답	793	793		군산시			
20	“	“	140-11	답	345	345		군산시			
소계(6필지)						1,59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예 정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21	군산	지곡	137-17	답	654	654		군산시			
22	“	“	479-7	도	13	13	농식품부	국			
23	“	“	140-12	도	3	3	군산시 지곡동 79	강종렬			
24	“	“	479-3	도	1,893	30	농식품부	국			
25	“	“	63-7	도	155	5	군산시 지곡동 901	채상목			
26	“	“	140-13	도	63	63		군산시			
27	“	“	산91-2	임	793	303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0 성원아파트 101동 1304호	최규송			
28	“	“	산92	임	3,074	1,844	군산시 삼학동 271-8	최규송			
29	“	“	328-9	전	2,195	2,195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군산시 공향로 422(산북동)	서군산 농업협 동조합	
30	“	“	328-6	전	1,373	44	군산시 금암동 284-12	나동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나운센 터지점)	농협협 동조합 농협은 주식회 사	
31	“	“	328-8	전	1,563	116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1길 21, 902동 1003호(공릉동,청솔아파트)	남상호			지분 397/1563
							서울특별시노원구 노원로1길 21, 902동 1003호(공릉동,청솔아파트)	구성자			지분 397/15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0, 102동 1805호(원효로4가,강변삼성스 위트)	박귀선			지분 132/15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68, 101동 702호(당산동1가,진로아파트)	이선우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 예농업 협동조 합	지분 637/1563
32	“	“	328	전	1,322	663	익산시 월성동 96-28	유덕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31-4, 108호	전주파 신동 용협 조합	
33	“	“	327-1	전	1,693	161	서울 중구 신당동 366-97 서울시니어스타워 1105호	강순남			
34	“	“	329	전	1,058	1,058	군산시 내초동 18	채금주		국 (군산세 무서)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 강공 보협 단	
35	“	“	329-1	전	3,203	759	군산시 지곡동 329-1	고병구	군산시 하포로 29(수송동)	군산원 예농업 협동조 합	
36	“	“	335	전	1,818	218	군산시 축동로42, 302동1001호 (수송동, 군산수송제일오토그란데1단지)	차판순	군산시 조촌동 774	군산농 업협 동조합	
37	“	“	127	전	1,190	363	군산시 남수송3길 22(수송동)	오종명	서울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가)	농협은 주식회 사	
소계(17필지)						8,492					
총 계(37필지)						19,388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군산	지곡	329-6	전	894	894		군산시			
2	“	“	329-8	전	130	130		군산시			
3	“	“	329-7	전	685	685		군산시			
4	“	“	산92-1	임	1,857	1,857		군산시			
5	“	“	328-14	전	110	110		군산시			
6	“	“	328-12	전	1,241	1,241		군산시			
7	“	“	328-9	전	954	954		군산시			
8	“	“	328-10	전	638	638		군산시			
9	“	“	산91-3	임	254	254		군산시			
10	“	“	328-11	전	42	42		군산시			
11	“	“	327-3	전	155	155		군산시			
12	“	“	335-1	전	222	222		군산시			청정
13	“	“	127-1	전	370	370		군산시			
14	“	“	128-4	답	415	415		군산시			
15	“	“	128-5	답	124	124		군산시			
16	“	“	128-6	답	637	637		군산시			
17	“	“	129-3	답	548	548		군산시			
18	“	“	129-5	답	705	705		군산시			
19	“	“	129-4	답	519	519		군산시			
20	“	“	126-8	답	177	177		군산시			
21	“	“	126-7	답	176	176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22	“	“	126-1	답	176	176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23	“	“	126-3	답	177	177		군산시			
24	“	“	126-4	답	176	176		군산시			
25	“	“	126-6	답	354	354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26	“	“	126-5	답	177	177	군산시 옥산면 남내로 105	김미란			
27	“	“	132-53	답	339	339		군산시			
28	“	“	64-31	답	1460	1460		군산시			
29	“	“	64-33	구	164	164		군산시			
30	“	“	136-8	답	473	473		군산시			
31	“	“	136-9	답	1,058	1,058		군산시			
32	“	“	136-10	답	595	595		군산시			
33	“	“	137-19	답	760	760		군산시			
소계(33필지)						16,76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34	군산	지곡	137-17	답	654	654		군산시			
35	“	“	137-18	답	572	572		군산시			
36	“	“	138-6	답	456	456		군산시			
37	“	“	139-6	답	793	793		군산시			
38	“	“	140-11	답	345	345		군산시			
39	“	“	137-9	구	302	9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40	“	“	63-1	구	13	1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41	“	“	63-3	구	360	2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 공사			
42	“	“	479-3	도	1,893	30		농수산부			
43	“	“	479-7	도	13	13		농수산부			
44	“	“	140-12	도	3	3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79	김종혈			
45	“	“	140-13	도	63	63		군산시			
46	“	“	63-7	도	155	5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901	채상묵			
소계(13필지)						3,062					
총 계(46필지)						19,824					